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부  
보다 나은 정부

청렴·세계  
"정직한 식약처 국민 안심의 시작"

# 식품위생법 질의답변집

● 2018. 6.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1장 식품위생법 관련 질의답변

<b>1.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b>	<b>3</b>
Q1.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보관한 경우 제4조 위반 여부	3
Q2. 제4조 위반으로 압류된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지 여부	3
Q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에 곰팡이 발견 시 제4조 위반 여부	4
Q4. 제4조제7호 '영업자'의 범위는?	4
<b>2.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b>	<b>6</b>
Q1. 국내에서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원료로 수출용 식품 제조·가공 가능 여부	6
Q2. 농산물에서 농약이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농산물을 판매한 자의 처분은?	6
Q3.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판매하면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인지 여부	7
Q4.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7
Q5. 집단급식소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도시락을 납품받아 급식으로 제공 가능 여부	7
Q6. 제과점에서 조리한 빵을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조리원료로 사용 가능 여부	8
Q7. 도시락을 국제선 항공기에 납품하는 경우 수출 해당 여부	8
<b>3. 제37조(영업허가 등)</b>	<b>10</b>
Q1.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을 제조한 경우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대상 여부	10
Q2. 활어를 회로 썰어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영업신고 대상 여부	10
Q3. 한시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11
Q4. 과자, 젤리 등을 소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11
Q5.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즉석섭취식품을 식품자동판매기로 판매가능여부	12
Q6. 제조행위 또는 소분행위 여부(1)	12
Q7. 제조행위 또는 소분행위 여부(2)	13

Q8. 농산물 소분·판매 시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13
Q9. 벌크형 두부 및 묵류 분할 판매 가능 여부	14
Q10. 식품소분업자가 질소 포장 제품을 질소 없이 소분가능한지 여부	14
Q11. 식용얼음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1)	15
Q12. 식용얼음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2)	15
Q13. 식용얼음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3)	15
Q14.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 여부(1)	16
Q15.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 여부(2)	16
Q16.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 여부(3)	17
Q17.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 여부(4)	17
Q18.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17
Q19. 유통전문판매업 영업행위 가능 여부(1)	18
Q20. 유통전문판매업 영업행위 가능 여부(2)	18
Q21.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수탁자에게 원료 제공 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18
Q2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1)	19
Q2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2)	19
Q2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3)	19
Q25.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4)	20
Q26.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행위 가능 여부	20
Q27. 벌크단위로 수입한 식기류를 국내에서 개별 포장 후 판매 시 영업신고 대상 여부	20
Q28. 음식점에서 사용할 기계나 기구를 직접 만드는 경우 영업신고 대상 여부	21
Q29.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도시락을 집단급식소에 배달판매가능한지 여부	21
Q30. 편의점 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대상 여부	21
Q31. 군사시설 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가능 여부	22
Q32. 제과점영업 진열·판매 가능 여부	22
Q33. 휴게음식점에서 조리한 빵 포장 판매 가능 여부	22
Q34. 일반음식점에서 구입한 조리식품을 소비자가 영업장 외 장소로 가져가 취식 가능 여부	23
Q35. 휴게음식점에서 소스를 일회용기에 넣어 제공 가능 여부	23

Q36. 출장뷔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가능 여부	24
Q37. 농장, 미술관에서 음료값이 포함된 입장권을 판매하고, 직접 음료류 등을 조리판매 시 영업신고 대상 여부	24
Q38. 문화센터에서 솜사탕 꾸미기 체험수업 시 영업신고 대상 여부	25
Q39. 냉동 핫도그를 튀겨 판매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 여부	25
Q40. 아이스크림을 기계를 이용하여 종이컵에 담아 판매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 여부	25
Q41.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주류를 취식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 상 위반인지 여부	26
Q42. 임대차 소송 중인 장소에 타인이 중복 영업신고 가능 여부	26
Q43. 행정제재절차 중의 폐업신고 가능 여부	27
Q44.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소재지 변경 가능 여부	27
Q45.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규 임차인의 영업신고 가능 여부	28
<b>4.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b>	<b>31</b>
Q1. 유흥주점 허가취소 장소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가능 여부	31
<b>5. 제39조(영업 승계)</b>	<b>34</b>
Q1. 영업자가 타인으로 변경될 시 지위승계 대상 여부	34
Q2. 위임인이 지위승계 시 신분증명서에 자필 서명 하여야 하는지 여부	34
Q3. 지위승계 위임인의 범위	35
Q4. 영업시설의 전부란	35
<b>6.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b>	<b>37</b>
Q1.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회수한 경우 행정처분 감면 대상 해당 여부	37
<b>7. 제51조 및 제52조(조리사 및 영양사)</b>	<b>39</b>
Q1. 장기요양기관에 고용된 조리원의 조리사 면허 여부	39
Q2.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가 있는 경우로서 조리사 고용 갈음의 식수인원 기준	39
Q3. 영양사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인력	40

Q4. 영양사 직무 범위	40
Q5.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대상이 아닌 곳의 영양사, 조리사의 고용 여부	40
Q6. 조리사 영양사 미고용 시 처벌	41
Q7. 영양사, 조리사 미고용에 따른 처벌대상	41
<b>8.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b>	<b>43</b>
Q1. 시정명령 처분 승계여부	43
<b>9.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b>	<b>44</b>
Q1. 기타식품판매업 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로 인한 과징금처분 시 기타식품판매업 내 타 영업매출은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44
Q2.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 부과 시 1차산물인 야채, 과일의 매출 또한 과징금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44
Q3. 3개의 제품이 한 페이지 내 과대광고로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 시 과징금 부과 산정 방법	45
Q4. 지위승계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	45
<b>10. 제84조(위반사실 공표)</b>	<b>48</b>
Q1. 시정명령 처분사항의 공표 여부	48
Q2. 위반사실 공표 기간	48
<b>11. 제88조(집단급식소)</b>	<b>50</b>
Q1. 집단급식소 특정다수인의 범위(1)	50
Q2. 집단급식소 특정다수인의 범위(2)	50
Q3. 집단급식소 특정다수인의 범위(3)	51
Q4. 집단급식소 1회 급식인원 산정기준	51
Q5. 집단급식소 이동배식 가능 여부	52
Q6. 집단급식소 조리실 공사기간동안 타 집단급식소로부터 급식을 받아 배식 가능 여부	52
Q7. 집단급식소에서 도시락 형태로 급식 제공 가능 여부	53

Q8. 학원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대상 여부	53
Q9. 아파트 내 입주민을 위한 식당 운영 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대상 여부	54
Q10. 교정시설, 소년원, 출입관리소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대상 여부	54
Q11. 군부대 및 의경부대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대상 여부	55
Q12. 50인 이하의 군부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대상 여부	55
Q13. 50명 이상의 기업체에서 출장뷔페로 급식 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대상 여부	56
Q14. 50인 이상의 학원에서 출장뷔페로 급식 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대상 여부	56
Q15. 집단급식소 내 완제품 비치 판매 가능 여부	57
Q16. 집단급식소 내 라면 즉석조리기 사용 가능 여부	57
Q17. 집단급식소 종료신고 가능 여부	58
Q18. 집단급식소가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처분?	58

## 제2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관련 질의답변

<b>1.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b>	<b>63</b>
Q1. 유흥종사자로 외국인 고용 가능 여부	63
Q2. 남자도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63
<b>2.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b>	<b>64</b>
Q1. 감자, 호박 등 농산물을 세척, 절단하여 비닐포장 후 판매 시 영업신고 대상 여부	64
Q2. 수확한 블루베리를 그대로 급속냉동하여 판매 시 영업신고 대상 여부	64
Q3. 진달래 꽃잎을 따서 건조 후 꽃차용으로 판매 시 영업신고 대상 여부	65
Q4. 당근, 양파, 피망 등을 세척, 절단하여 판매 시 영업신고 대상 여부	65
Q5. 수확한 딸기를 꼭지만 제거 후 급속 냉동하여 판매 시 영업신고 대상 여부	66
Q6. 천일염을 이물선별, 건조하여 판매 시 영업신고 대상 여부	66
Q7. 직접 양봉하여 수확한 꿀 판매 시 영업신고 대상 여부	67
Q8. 어업인이 수산물을 소금과 혼합하는 등 절여서 공장 등에 판매할 경우 영업신고(등록) 대상 여부	67

Q9. 고등어의 내장, 지느러미 등을 제거, 절단 후 진공포장하여 냉동 판매 시 영업신고 대상 여부	68
Q10. 낙지를 내장제거, 세척 후 포장 판매 시 영업신고 대상 여부	68
Q11. 냉동 문어를 해동 후 내장제거, 절단 후 판매 시 영업신고 대상 여부	69
<b>3.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b>	<b>71</b>
Q1. 제조품목 추가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 여부	71
Q2.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 여부	71
<b>4. 제26조의3(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b>	<b>73</b>
Q1.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대상 여부	73
Q2. 추가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신규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 변경등록 대상 여부	73
<b>5.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b>	<b>74</b>
Q1. 독성이 손질된 복어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복어조리사 고용 여부	74
<b>6.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b>	<b>75</b>
Q1. 퇴사한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시 과태료 처분 대상 여부	75
Q2. 한 제품에 3가지의 영양성분 표시가 위반인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75
Q3. 품목제조보고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 기준	76
Q4. 품목제조보고 상 누락된 원료를 첨가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76
Q5.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란?	77
Q6. 과태료 처분 차수 기준(1)	77
Q7. 과태료 처분 차수 기준(2)	78
Q8. 휴업한 영업자의 위생교육 미수로 과태료 대상 여부	79
Q9. 행정청의 실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취소 가능 여부	80

## 제3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관련 질의답변

<b>1.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b>	<b>89</b>
Q1. 위생모 착용기준	89
Q2. 마스크 착용 기준	89
<b>2. 제8조(허위·과대광고)</b>	<b>91</b>
Q1.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원재료 효능효과 광고 가능 여부	91
Q2. '해독주스' 또는 '디톡스주스' 표현 가능 여부	91
Q3. '생리통완화' 표현 가능 여부	91
Q4. '당뇨개선', '당뇨환자를 위한' 등 표현 가능 여부	92
Q5. 블로그, 카페, SNS 상 식품 리뷰를 식품판매사이트에 링크 가능한지 여부	92
Q6. 고객이 작성한 후기 허위·과대광고 범위 해당 여부	92
Q7. 특허 내용 광고 가능 여부	93
Q8. 다이어트 카테고리 내 음료류를 인터넷을 통해 구분하여 판매 가능 여부	93
Q9. 숙취해소 등의 표현 가능 여부	93
Q10. '한정수량 00개' 표현 가능 여부	94
Q11. '00명 주문', '00명 동시주문 중', '00세트 판매 돌파', '전체수량 비상' 표현 가능 여부	94
Q12. 식품첨가물의 광고 심의 절차	94
Q13. '식사대용', '한끼대용', '대체식' 표현 가능 여부	95
Q14. 농산물 광고 가능 여부(춘곤증을 이기는 음식)	95
Q15. '환우들이 많이 찾는', '면역력에 도움 되는' 표현 가능 여부	95
Q16. 일반음식점 조리식품 효능효과 광고 가능여부	96
Q17. 발효나물에 대하여 '피로회복', '음경의 해면체를 충만하게 한다' 등으로 광고 가능 여부	96
Q18. 힌강낭콩 함유 두유 광고 시 힌강낭콩 기사를 삽입하여 광고 가능 여부	97
Q19. 두류가공품을 '두유'로 판매하는 경우 허위·과대광고 해당 여부	97
Q20. 식품제조·가공업소 내 인쇄물에 제품의 효능 광고 가능 여부	98



Q21. 제과점의 원재료 효능 광고 가능 여부	98
Q22. 가공식품의 원재료 중의 특정 성분 함유 사실 광고 가능 여부	98
Q23. 말린비트 광고 가능 여부	99
Q24. 고객후기 중 질병명을 ** 등으로 가린 후 광고 가능 여부	99
Q25. 상장 인용 광고 가능 여부	100
Q26. 생식함유제품 광고 시 체험기 광고 가능 여부	100
Q27. 어묵 판매 시 '최고급', '가장 좋은', ' 으뜸인' 표현 가능 여부	101
Q28. 과일퓨레에 '이유식' 표현 가능 여부	101
Q29. 질병의 효능·효과가 있다는 영상광고 가능 여부	102

### 3.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105

Q1. 식품제조·가공 중 동결건조공정을 실험실 내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105
Q2. 반려동물제품 제조 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 사용 가능 여부	105
Q3.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탁생산 범위란?	106
Q4.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의뢰한 제품의 공정을 타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 가능 여부	106
Q5. 식품첨가물제조업 시 배수시설, 환기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면적 제한 여부	107
Q6.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세척제제조업 작업장 공동 사용 가능 여부	107
Q7.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작업장 공동 사용 가능 여부	108
Q8.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휴게음식점 작업장 공동 사용 가능 여부	108
Q9. 식품소분업자가 냉동, 냉장식품 소분 시 작업장 온도 기준	108
Q10. 유통전문판매업의 반품·교환시설을 식품 보관창고와 공동 사용 가능 여부	109
Q1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영업신고 소재지 외의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 가능 여부	109
Q1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냉동, 냉장 제품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 냉동, 냉장 시설이 없어도 되는지 여부	109
Q13. 식품접객업소 CCTV로 조리장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한 경우, 조리장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110
Q14.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의 공동조리장에서 조리된 식품을 각 영업장 사용 가능 여부	110
Q15. 키즈카페, 일반음식점 샵인샵 영업 시 시설기준	111
Q16. 일반음식점 내 노래반주기 설치 가능 여부	111

Q17. 일반음식점, 횡집에서 옥외에 가마솥, 수족관 설치 가능 여부	112
Q18.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영업신고 면적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	112
Q19. 일반음식점과 일반음식점 간 분리 여부	113
Q20. 애견용품매장과 카페 운영 시 손님이 커피를 가지고 애견용품매장 방문이 가능한지 여부	113
<b>4. 제37조(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식품)</b>	<b>132</b>
Q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반찬 완제품을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덜어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132
Q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미리 덜어서 포장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132
Q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설령탕, 갈비탕 등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133
Q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소시지를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133
Q5.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아이스크림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134
Q6.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깨, 참기름 등 다른 원재료를 첨가하여 판매 가능한지 여부	134
Q7.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병에 든 주스를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134
Q8.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테이크아웃으로 따뜻한 음료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135
<b>5. 제38조(식품소분업 신고대상)</b>	<b>137</b>
Q1. 꿀 소분·판매 가능 여부	137
Q2. 식용유지 소분·판매 가능 여부	137
Q3. 특수의료용도식품 소분·판매 가능 여부	137
<b>6. 제39조(기타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b>	<b>139</b>
Q1. 기타식품판매업소 영업장 면적 산정 시 타 업종면적 포함 여부	139
Q2. 기타식품판매업소 영업장 면적 산정 시 '사무실' 포함여부	139
Q3. 기타식품판매업소 영업장 면적 산정 시 '기계실' 포함 여부	139

<b>7. 제42조(영업신고)</b>	<b>141</b>
Q1. 위탁급식영업신고 시 제출서류	141
<b>8. 제44조(폐업신고)</b>	<b>146</b>
Q1. 공동명의일 경우, 한명이 폐업신고 진행 가능 여부	146
Q2. 폐업신고 시 영업신고증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별도 제출 여부	146
<b>9. 제45조(품목제조의 보고등)</b>	<b>148</b>
Q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품목제조보고 의무	148
Q2. 품목제조보고 시 제품명 영어만 사용 가능 여부	148
Q3. 반제품 품목제조보고 대상 여부	149
Q4. 품목제조보고 시 배합비율 산정 기준	149
Q5. 배합비율 기재 조건 중 '사용기준'이란	150
Q6. 튀김 시 사용하는 기름, 면을 삶을 때 첨가되는 소금 등 원료 기재 대상 여부	150
Q7. 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 품목제조보고서 상 기재 여부	151
Q8. 복합원재료의 세부항목 입력 여부	151
Q9. 원재료의 원산지 품목제조보고서 상 기재 여부	151
Q10. 원재료의 품종이 다를 경우 별도 품목제조보고 대상 여부	152
Q11. 전량 수출용 제품 품목제조보고 대상 여부	152
Q12. 기 품목제조보고 된 내수용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별도 품목제조보고 대상 여부	152
Q13. 원재료, 배합비율 등이 모두 동일한 제품을 다른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여부	153
Q14. 기 품목제조보고 된 제품과 원재료는 동일하나 제조방법이 상이한 경우 다른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 여부	153
Q15. 기 품목제조보고 된 제품과 용량만 다르게 하여 다른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 여부	154
Q16. 기 품목제조보고 된 제품의 배합비율의 일부를 조정하여 다른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 여부	154
Q17. 유통전문판매업자가 기 품목제조보고 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제조의뢰한 경우 다른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 여부	154

Q18. 여러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동일한 제품의 제조를 의뢰한 경우 각각 다른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 여부	155
Q19. 포장재질, 유통기한만이 상이한 두 제품을 별도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 여부	155
Q20. 표시 완제품을 세트로 구성한 경우 품목제조보고 대상 여부	155
Q21. 자사 제품과 타사 제품을 세트로 구성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하려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대상 여부	156
Q22. 위탁제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 주체	156
Q23.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품 생산을 위탁한 경우 품목제조보고 주체	156
Q24. 품목제조보고 중단보고 할 시 기 생산된 제품 판매 가능 여부	157
Q25. 품목제조보고 중단보고 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 가능 여부	157
Q26. 식품과 축산물을 하나의 제품으로 구성 시 품목제조보고	157
<b>10. 제4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b>	<b>159</b>
Q1.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 시점	159
Q2. 식품첨가물을 변경할 경우 중단보고 대상 여부	159
Q3. 원재료 변경할 경우 변경보고 대상 여부	159
Q4. 원재료의 제품명이 변경될 경우 변경보고 대상 여부	160
Q5. 원재료의 원산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보고 대상 여부	160
Q6.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만 변경할 경우 변경보고 대상 여부	160
Q7. 제조방법 중 일부를 변경할 경우 변경보고 대상 여부	161
Q8.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른 유형변경 시 변경보고 대상 여부	161
Q9. 유통기한을 단축할 경우 변경보고 대상 여부	161
Q10. 영업승계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보고 대상 여부	162
Q11.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보고 대상 여부	162
<b>11.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b>	<b>164</b>
Q1. 식품 생산과 관련없는 사무실 직원의 건강진단 대상자 여부	164
Q2. 단기 아르바이트 작업자의 건강진단 대상자 여부	164
Q3.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대표자의 건강진단 대상자 여부	164

Q4. 음료기계 설치·수리기사의 건강진단 대상자 여부	165
Q5. 사회봉사자의 건강진단대상자 여부	165
Q6. 식자재 배송 기사의 건강진단 대상자 여부	166
<b>12. 제57조(영업자 준수사항)</b>	<b>167</b>
Q1.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생산 및 작업기록의 범위는?	167
Q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수탁업소를 점검할 시 외부기관에 위탁 가능 여부	167
Q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쿠키를 미용실에서 진열·판매 가능 여부	168
Q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배달 가능 지역	168
Q5.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배달 위탁 가능 여부	168
Q6.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쿠키를 식품접객업소(체인점)에 납품하여 진열·판매 가능 여부	169
Q7.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제품을 식품접객업소에서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제공 가능 여부	169
Q8.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제품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원료로 사용 가능 여부	170
Q9.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오픈마켓 등으로 주문을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 여부	170
Q10.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블로그를 통해 소비자에게 주문받아 배달 가능 여부	171
Q1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냉동액란을 해동하여 집단급식소에 납품 가능 여부	171
Q12.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업신고증 원본을 비치하지 않을 시 위반인지 여부	172
Q13. 식품접객업소의 거래명세서 보관기간	172
Q14. 일반음식점 상호명으로 'OO카페', 'OO커피', 'OO바' 사용 가능 여부	173
Q15. 식품접객업소 상호명으로 행정명칭(면사무소, 서울특별시 등) 사용 가능 여부	173
Q16. 식품접객업 업종명 표시	174
Q17. 유흥종사자 명부 기록관리 여부	174
Q18. 식품접객업소의 가격 표시 방법	175
Q19. 식품접객업소의 가격을 '숫자(시가)'로 표현 가능 여부	175
Q20. 식품접객업소의 식육 가격 표시방법	175
Q21. 식품접객업소의 메뉴 중량 표시 위반 여부	176

<b>13. 제89조(행정처분 기준)</b>	<b>190</b>
<hr/>	
Q1.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서류정리, 청소 등 가능 여부	190
Q2. 품목류 제조정지의 범위	190
Q3.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시 행정처분 기준	191
Q4. 일반음식점 외의 장소에서 식재료 보관 시 행정처분 기준	191
Q5. 영업정지 7일을 영업정지와 과징금처분으로 나누어 처분 가능 여부	192
Q6.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종사자를 불러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경우 제44조 1항, 3항, 4항 중 어떤 조항 위반인지 여부	193
Q7. 청소년 주류 제공에 따른 불기소처분 받아 영업정지를 감경 받은 경우, 감경 받은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194
Q8. 청소년 주류 제공에 따른 불기소처분 시 불기소의 종류와 관계없이 감경가능한지 여부	195
Q9. 사법기관에서 형사적 입건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영업자는 미입건, 종업원만 형사처벌받은 경우, 제44조제2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196
Q10. 행정처분 차수적용	197
Q11. 행정심판 재결 결과 처분이 감경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과징금 처분	198
Q12. 배달책자 내 한 업소가 여러 개의 상호 사용 시 위반 여부	199
Q13. 제조원, 판매원이 다를 때, 허위·과대광고 처분 대상	199
Q14. 일반음식점 내 카지노시설 설치만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200
Q15.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행정심판청구'가 해당되는지 여부	200
Q16. 식품접객업소 수족관물에서 식중독균 검출 시 행정처분 기준	201
<b>14.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b>	<b>242</b>
<hr/>	
Q1. 집단급식소 대표자명	242
<b>15.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b>	<b>245</b>
<hr/>	
Q1. 보존식 보관 방법(1)	245
Q2. 보존식 보관 방법(2)	245
Q3. 보존식 보관 방법(3)	246
Q4. 남은 급식을 재가열, 재조리하여 제공 가능 여부	246

<b>16.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b>	<b>247</b>
Q1.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대상 여부	247
<b>17. 제100조(과태료의 부과기준)</b>	<b>250</b>
Q1. 집단급식소에서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았을 시 과태료 처분 기준	250
Q2. 마트에서 냉동 수산물을 상온에서 판매할 시 과태료 처분 대상 여부	250
Q3. 과태료 부과 기준 상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251

# 제 1 장

## 식품위생법 관련 질의답변





## 1

##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 Q1.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보관한 경우 제4조 위반 여부

개인사업자(중도매업자)가 유통기한이 10년이나 경과한 북한산 냉동 개조갯살을 보관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4조제1호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제4호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가요?

- ☞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가 아닌 자가 판매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나, 판매 목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Q2. 제4조 위반으로 압류된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지 여부

「식품위생법」 제4조제4호 위반 압류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적합 시 생산·유통 가능한가요?

- ☞ 「식품위생법」 제4조제4호 위반으로 압류된 제품의 생산·유통은 불가능합니다.

### Q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에 곰팡이 발견 시 제4조 위반 여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반찬가게)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반찬을 팔던 중, 곰팡이가 핀 것을 모르고 판매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식품위생법」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요?

- ㉞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면서 판매한 일부 제품에서 곰팡이가 핀 사실 자체만으로는 「식품위생법」 제4조제3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만, 판매자가 곰팡이가 피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고의성을 가지고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4조제3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Q4. 제4조제7호 '영업자'의 범위는?

「식품위생법」 제4조제7호에서 정한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중 '영업자'의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자도 포함되는지?

- ㉞ 「식품위생법」 제4조제7호에서 정한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중 '영업자'는 제조·가공·소분이 가능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영업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제37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뜻하므로 일반음식점 영업자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법령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6.2.3.>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2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Q1. 국내에서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원료로 수출용 식품 제조·가공 가능 여부

현재 국내에서는 이카린 성분이 식품 사용 원료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량 수출용 제품을 만들때만 사용한다면 가능한가요?

- ㉞ 귀하께서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기준 및 규격에 말씀하신 이카린 성분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해당 제품을 전량 수출용으로 품목제조보고 하신 후 전량 수출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국가의 기준 및 규격을 확인 하신 후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기 바랍니다.

Q2. 농산물에서 농약이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농산물을 판매한 자의 처분은?

상인이 농산물을 받떼기로 구매하여 판매 하던 중 농산물에서 농약이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상인을 상대로 「식품위생법」 제7조 위반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 ㉞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던 중 해당 농산물에서 농약이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라면 이를 생산한 자 및 판매한 자(상인)는 「식품위생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Q3.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판매하면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인지 여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㉞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지 않은 식품원료목록에 없는 원료 또는 식품 원료로 사용가능한 부위가 아닌 부분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것은 아니므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판매하면서 식품(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상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 Q4.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을 구입하여 인터넷으로 유통·판매할 수 있나요?

- ㉞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판매하는 영업을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리식품을 온라인을 통해 전문적으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상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온라인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만 배달의 형태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Q5. 집단급식소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도시락을 납품받아 급식으로 제공 가능 여부

집단급식소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도시락을 납품받아 그대로 제공할 수 있나요?

- ㉞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도시락 등)을 납품받아 급식의 메뉴로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Q6. 제과점에서 조리한 빵을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조리 원료로 사용 가능 여부

제과점에서 조리한 빵을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사용 할 수 있나요?

- ㉞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자) 설치·운영자가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빵 등)을 납품받아 급식,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에 사용하는 것은 식품안전관리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납품받아 급식 또는 식품 제조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Q7. 도시락을 국제선 항공기에 납품하는 경우 수출 해당 여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만든 도시락을 고객 및 승무원 섭취목적으로 국제선 항공기에 납품하는 경우, 이 행위를 수출로 볼 수 있나요?

- ㉞ 「식품위생법」에서 '수출'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관세법」 제2조에서는 '수출'을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수출'을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 (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항공기에 선적되는 기내식은 국내에서 물품공급 계약이 완료되고, 그 대부분이 공해상에서 소비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출식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해 제품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기준 및 규격 및 표시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 법령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6.2.3.>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제37조(영업허가 등)

#### Q1.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을 제조한 경우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대상 여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레토르트 제품(식품)에 충전할 목적으로 질소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 별도의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유통목적이 없음)

- ㉞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질소를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것이 아닌 자사 제품 제조 공정 중에 사용할 목적으로 질소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2. 활어를 회로 썰어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영업신고 대상 여부

마트 내에서 활어를 썰어서 활어회를 판매하려는 경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㉞ 활어를 절단하여 소비자가 더 이상의 세척, 가열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회 제품이라면 “수산물”에 해당되며, ‘수산물’을 판매 시 「식품위생법」상 별도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현행「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중 수산물에 해당하는 기준 및 규격(세균수, 대장균, 식중독균, 일산화탄소 등)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활어회가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없도록 가공하고 진열·판매(배달 포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영업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Q3. 한시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A지역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득하고 B지역의 마트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한시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1개월 이내 한시적 영업이 가능하여 가능 범위 내에서 영업 후 며칠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시적 영업을 신고 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한 장소에서 한시적 영업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한시적 영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영업신고를 하라고 말하는데 정식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㉞ 한시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는 지역축제 등 행사 장소에서 일시적인 영업을 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시적 영업이 아닌 별도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4. 과자, 젤리 등을 소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과자, 사탕, 젤리 벌크 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동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 ㉞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과자, 사탕, 젤리 등 표시 완제품을 뜯어 소분·포장 후 세트로 조합하는 경우라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식품소분업’은 ‘표시 완제품을 소분·재포장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임.

### Q5.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즉석섭취식품을 식품자동판매기로 판매가능여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즉석섭취식품(김밥, 샐러드 등)을 제조·가공하여 본인 명의의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신고를 득한 후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 ㉞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가 동일할지라도 즉석판매 제조·가공식품을 식품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유통·판매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 Q6. 제조행위 또는 소분행위 여부(1)

수입제품이며 티백에 넣기 좋게 분쇄되어 나온 제품을 삼각티백에 넣어 판매하려는 경우 제조행위인가요? 소분행위인가요?

- ㉞ 일반적으로 식물의 어린 싹이나 잎, 꽃, 줄기, 뿌리, 열매 또는 곡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물에 침출하여 그 여액을 음용하는 기호성 식품이라면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제4. 9. 음료류 9-1 다류 4) (1) “침출차”에 해당합니다.

이를 제조·가공하여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상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및 품목제조보고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제조·판매하여야 하며,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7. 제조행위 또는 소분행위 여부(2)**

현재 과·채가공품을 수입 후 제품의 매운맛을 줄이기 위하여 세척 후 다시 포장·판매하려는 경우 소분행위인가요? 제조행위인가요?

- ㉞ 질의하신 제품이 식품유형이 과·채가공품인 제품을 원료로 내용물의 매운맛을 제거하기 위해 세척하여 재포장한 것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면 동 고시 제4. 15. 15-7 4) (1) “과·채가공품”에 해당하며, 과·채가공품을 제조·가공하여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후 당해 품목에 대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제품은 동일유형 동일제품으로 재가공한 것이므로, 유통기한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료제품의 유통기한 내에서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8. 농산물 소분·판매 시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수입견과류(예: 견살구, 통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캐슈넛, 호박씨, 해바라기씨 등)를 소분·판매 시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 ㉞ 농산물을 소분·판매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소분업’ 등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 Q9. 벌크형 두부 및 묵류 분할 판매 가능 여부

두부와 포장방법 및 표시사항과 판매방법이 유사한 묵류(판, 벌크형 포장)의 경우도 영업신고 없이 분할 판매 가능한가요?

- ㉞ 벌크형 포장두부나 판두부를 슈퍼 등에서 최종소비자에게 분할 판매하는 것은 영업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14.9월)한 바 있습니다. 두부와 유사한 포장방법과 판매방법인 묵류(판, 벌크형 포장)에 대해서도 상기 내용과 같이 영업신고 없이 분할판매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Q10. 식품소분업자가 질소 포장 제품을 질소 없이 소분가능한지 여부

식품소분업자가 질소 포장된 수입제품을 질소 포장 없이 소분포장이 가능한가요?

- ㉞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품소분업”이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입니다.

품질변화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질소 포장된 수입제품을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하여 일반포장을 하는 경우 유통기한이 짧아질 수 있으므로 원래 제품 그대로 질소 충전하여 재포장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II.1.타.에 따라 식품소분업소에서 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 해당 식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유통기한은 해당 제품에 원래의 표시사항에 표시된 유통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내용량, 업소명 및 소재지, 영양성분 표시는 소분에 맞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고시의 II.2. 라. 9)에 따르면 식품의 보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질소가스 등을 충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Q11. 식용얼음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1)**

어업용 얼음 판매 시 식용얼음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 ㉞ 식용얼음이 아닌 어패류 등의 저장 및 보존을 위해 사용하는 '어업용 얼음'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식용얼음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2. 식용얼음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2)**

얼음류 제조업자에게 포장된 얼음류를 그대로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식용얼음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 ㉞ 식용얼음 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하여 포장한 얼음을 그대로 판매하려는 경우 '식용얼음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3. 식용얼음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3)**

얼음류 제조업자로부터 포장된 얼음류를 납품받아 톱으로 절단하여 재포장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별도 식용얼음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 ㉞ 식용얼음 제조·가공업자로부터 얼음을 납품받아 절단하여 커피숍 등에 직접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 '식용얼음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Q14.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 여부(1)

병두유, 요플레(완제품), 마시는요플레 등 우유&유제품 완제품 넣어 자판기로 판매할 수 있나요?

- ㉞ 유통기한이 1개월 미만인 식품, 우유 등 유제품(완제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려는 경우라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등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 Q15.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 여부(2)

편의점 등에서 자동커피머신을 설치하고 고객이 카운터에서 얼음컵, 테이크 아웃 컵을 계산 후 직접 커피머신을 이용하여 커피를 섭취하는 경우, 자동커피머신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 ㉞ 편의점 등에서 자동커피머신을 설치하고 고객이 카운터에서 얼음컵, 테이크 아웃 컵을 계산 후 직접 커피머신을 이용하여 커피를 섭취하는 경우, 해당 편의점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은 「식품위생법」 상 별도의 영업 등록 또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편의점 내부에 손님이 직접 음식물을 데워먹을 수 있는 전자렌지, 따뜻한 물을 제공하는 디스펜서 및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 바를 설치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상 제한사항이 아닙니다.

**Q16.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 여부(3)**

편의점 직원이 손님에게 커피 금액을 미리 받아 결제 후, 커피자동머신기로 커피를 뽑아 손님에게 제공하는 경우, 자동머신기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 ㉞ 직원이 손님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등의接客행위 없이 손님이 직접 커피머신기를 이용하여 스스로 커피를 뽑아 섭취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에 해당하나, 직원이 커피머신기를 이용하여 커피를 뽑아 손님에게 제공하여 주는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휴게음식점'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Q17.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 여부(4)**

제가 봉지라면과 용기(코팅 종이재질)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이 라면조리기를 이용하여 직접 조리를 하여 섭취할 경우, 라면조리기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 ㉞ 귀하께서 고객에게 봉지라면, 용기를 제공하고 고객이 직접 해당 기계를 이용하여 조리 및 섭취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상 별도의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18.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식품제조·가공업소(A)에서 제조한 제품을 도·소매 업체인 (B)에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B)업체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 ㉞ 도·소매업체와 식품제조·가공업소 간 가공식품의 제조·가공 의뢰 관계가 없었고, 도·소매업체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제품을 단순히 납품받아 판매하는 경우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19. 유통전문판매업 영업행위 가능 여부(1)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조업자에게 의뢰하는 과정에서 상품 공급 계약을 제조원과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제조원 동의 하에 중간 판매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상으로 문제가 되나요?

- ㉞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직접 제조 의뢰를 하지 않고 중간 판매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식품을 제조토록 하는 것은 유통전문판매업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적절치 않습니다.

### Q20. 유통전문판매업 영업행위 가능 여부(2)

하나의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두 곳의 식품제조·가공업체에 같은 품목을 같은 제품명으로 생산 의뢰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 ㉞ 하나의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두 곳의 식품제조·가공업체에게 똑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제품명으로 생산 의뢰를 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Q21.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수탁자에게 원료 제공 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수탁사에 원료 공급 시 별도로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 해야 하나요?

- ㉞ 유통전문판매업소가 식품제조·가공업체에 특정 제품의 제조·가공을 의뢰하면서 원료를 제공할 경우 유통전문판매업체가 별도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Q2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1)**

저희가 현재 집단급식소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소분 판매업은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사 제조상품 외에 다른 업체 가공품을 납품받아 집단급식소에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동 경우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소분 판매업은 가지고 있어도 따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 귀 사가 식품제조·가공업자로서 제조·가공한 제품을 직접 집단급식소에 납품 하려는 경우라면 별도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타 제조업체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납품받아 이를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하려는 경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2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2)**

수입 냉동수산물을 소분하여 집단급식소가 아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별도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 ☞ 수입 냉동수산물을 단순히 소분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상 별도의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3)**

먹는물을 집단급식소에 배달 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 ☞ 먹는 샘물만을 집단급식소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별도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먹는 샘물은 환경부에서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 물 관련 영업 및 먹는 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Q25.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4)

현재 식용란 수집판매업은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소에 계란만을 납품할 경우 별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㉞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별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없이 집단급식소에 계란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Q26.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행위 가능 여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집단급식소 이외의 장소에도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나요?

- ㉞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이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기존에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집단급식소에 제공되어 오던 식품에 대하여 위생적인 관리를 강화하고자 신설한 업종입니다. 따라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자는 집단급식소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Q27. 벌크단위로 수입한 식기류를 국내에서 개별 포장 후 판매 시 영업신고 대상 여부

이유식기를 벌크상태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개별 포장작업하여 판매할 경우 별도의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 ㉞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통관된 이유식기 등 수입한 식품용 기구를 국내에서 단순히 개별 포장하여 유통·판매하려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상 별도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장기기 등 관련 시설은 위생적으로 취급하시기 바라며, 당해 제품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Q28. 음식점에서 사용할 기계나 기구를 직접 만드는 경우 영업신고 대상 여부**

음식점에서 사용할 기계나 기구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 ㉞ 식품의 조리에서 사용되는 기계·기구를 제작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상 별도 영업허가·신고·등록 없이 제조 가능하며,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Q29.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도시락을 집단급식소에 배달판매 가능한지 여부**

도시락 등을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일반음식점 혹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업종 전환을 하여 도시락 등을 집단급식소에 배달·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㉞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한 곳이라면 직영 또는 위탁으로 급식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도시락을 배달 받아 급식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일반음식점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가 도시락을 만들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에 배달·제공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Q30. 편의점 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대상 여부**

편의점에서 휴게음식점업을 내지 않고도 고객이 음식을 구매 후 직접 조리하여 취식할 수 있나요?

- ㉞ 편의점에서 직원이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는 등의 접객영업행위를 일체하지 않고, 편의점 내에서 판매하는 완제품을 그대로 소비자가 구입 후 구입한 완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여 취식하는 경우는 별도의 영업신고가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Q31. 군사시설 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가능 여부

군사시설 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가능여부?

- ㉞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동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를 하면 휴게음식점 영업을 가능합니다.

### Q32. 제과점영업 진열·판매 가능 여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냉동케익을 제과점에서 해동하여 과일과 슈가파우더 등으로 데코레이션 작업을 한 후 냉장 진열 케이스에 넣고 판매할 수 있나요?

- ㉞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케이크를 구입하여 제과점 영업소에서 해동 후 과일과 슈가파우더 등으로 데코레이션 작업을 하여 냉장 진열 케이스에 넣고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 Q33. 휴게음식점에서 조리한 빵 포장 판매 가능 여부

휴게음식점에서 빵을 조리하여 봉지나 투명 케이스에 넣어서 판매할 수 있나요?

- ㉞ 휴게음식점(식품접객업) 영업을 주로 하면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부수적으로 휴게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빵)을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 Q34. 일반음식점에서 구입한 조리식품을 소비자가 영업장 외 장소로 가져가 취식 가능 여부

일반음식점에서 구매한 음식을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영업장 외 장소로 가져가 취식할 수 있나요?

- ㉞ 일반음식점 영업소에서 구매한 음식물을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영업장소 외 공간으로 가져가 취식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장 면적 외의 장소에서 식사 시 접객행위(서빙 등)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영업장 변경 미신고 등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Q35. 휴게음식점에서 소스를 일회용기에 덜어 제공 가능 여부

휴게음식점에서 소스를 1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덜어서 고객에게 판매하고자 하는데 가능하나요?

- ㉞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식품을 판매하면서 가공식품인 소스를 덜어서 영업장 내에서 취식하도록 제공(판매)하거나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시 소스를 특정 용기에 덜어 판매하려는 등의 경우는 식품접객업의 영업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소스를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소분하려는 경우라면 ‘식품소분업’ 영업대상에 해당합니다.

### Q36. 출장뷔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가능 여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기업이 요청한 식사를 대량으로 배달·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㉞ 식수인원이나 배달의 정기적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요청에 따라 밥, 국, 반찬을 영업장 내 조리 후 ① 제공하여 배식 또는 자율취식, ② 제공받은 음식을 현장에서 가열하여 제공, ③ 도시락 등 특정용기에 담아 배달·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이라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한 후 배달 등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출장뷔페(조리) 형태의 영업을 “일반음식점”으로 관리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조치(‘16.9.2)한 바 있습니다.

- \* 관할 지자체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출장뷔페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관리대장’상의 영업을 형태의 ‘출장조리’로 구분·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함.

### Q37. 농장, 미술관에서 음료값이 포함된 입장권을 판매하고, 직접 음료류 등을 조리판매 시 영업신고 대상 여부

농장, 미술관 등을 운영하면서 방문객에게 “음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한 입장권을 판매하여 입장 시 자신이 원하는 음료나 디저트를 메뉴에서 선택하면 종업원이 직접 조리 (커피를 내리는 등의 행위)하여 방문객에게 제공하거나 방문객에게 종이컵, 얼음이 있는 컵 등을 종업원이 제공하면 직접 커피머신기에서 커피를 내리는 등 셀프서비스 형태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㉞ 「식품위생법」 상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가 필요하며(「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판매’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하므로 (「식품위생법」제3조제1항), “음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한 입장권을 판매하여 입장 시 자신이 원하는 음료나 디저트를 메뉴에서 선택하면 종업원이 직접 조리 (커피를 내리는 등의 행위)하여 방문객들에게 제공한 것은 영업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식품위생법」 상 휴게음식점영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만약 영업자 및 종업원의 조리·판매 행위가 없이 셀프서비스의 형태로만 운영 되는 경우라면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Q38. 문화센터에서 솜사탕 꾸미기 체험수업 시 영업신고 대상 여부**

마트 문화센터에 수강료를 내고 솜사탕 꾸미기 수업을 하는 경우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 ㉞ 수강료를 받고 솜사탕 및 재료를 세팅하여 솜사탕을 꾸미는 수업을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9. 냉동핫도그를 튀겨 판매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 여부**

냉동핫도그를 튀겨서 뜨겁게 만들어 판매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 ㉞ 냉동핫도그를 기름을 이용하여 튀겨서 판매하는 경우는 휴게음식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40. 아이스크림을 기계를 이용하여 종이컵에 담아 판매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 여부**

표시 완제품인 아이스크림을 기계위에 올려 놓고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 아이스크림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계로 직접 아이스크림을 추출후 종이컵에 담아주려는 경우 별도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㉞ 판매자가 아이스크림 완제품을 개봉하여 던어주거나 기계를 이용하여 종이컵에 담아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Q41.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주류를 취식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 상 위반인지 여부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여 그 앞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는 행위가 「식품위생법」 상 위반행위인가요?

- ㉞ 조리행위 없이 완제품만을 판매하는 편의점영업은 「식품위생법」 상 별도의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며,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구입한 주류를 당해 장소에서 취식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상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참고로, 편의점주가 커피, 분식류 등을 조리·판매하기 위해 일부 공간에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한 경우라도 소비자가 영업신고 구역(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편의점 내부 또는 외부)에서 주류 등을 자율적으로 취식하는 행위를 「식품위생법」으로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Q42. 임대차 소송 중인 장소에 타인이 중복 영업신고 가능 여부

현재 영업주 “B”는 건물주 “A”를 상대로 임대차 관련 소송 중이며, 해당 장소의 영업권을 주장하고 있어 소송 종료 시까지 폐업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건물주 “A”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C”에게 중복으로 영업신고 처리가 가능한가요?

- ㉞ 새롭게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신고를 한 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야 하며, 이미 영업신고가 된 장소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영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정한 바와 같이 영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직권 말소되거나 같은 법 제75조제3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해 영업소가 폐쇄된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영업신고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기존 영업자는 폐업신고도 하지 않았고,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 중으로 폐업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므로 상기 사유의 직권말소 또는 폐쇄 대상의 영업을 아닌 것으로 보아 새로운 영업신고 수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Q43. 행정제재절차 중의 폐업신고 가능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행정제재절차가 진행 중[(단속부서인 경찰 유선 및 공문통보,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 중, 이의 제기 중(검찰 등 수사결과에 따라 처분 원함) 포함] 중인 상태에서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지위승계자 포함)가 행정청에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요?

-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분 사전 통지, 청문 등의 행정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8항이 적용되어 폐업신고가 불가합니다.

**Q44.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소재지 변경 가능 여부**

해당업소의 위생점검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 행정제재처분기간에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할 수 없나요?

-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비 서류를 갖추어 영업신고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 변경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신고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을 위한 진행사항은 변경된 소재지의 업소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 Q45.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규 임차인의 영업신고 가능 여부

임대인은 전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장소에 전 임차인의 영업신고권이 말소되지 않아 신규 임차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전 임차인이 직접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신규 임차인의 영업신고는 가능하지 않나요?

㉞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같은 법 제7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에 따라 관할행정관청에서 직권 말소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 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따라서 전 영업자의 경우가 상기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직권말소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고의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영업허가 등의 업무 수행 시 사실상 폐업할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반출하는 등 객관적으로 폐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직권말소 또는 폐쇄처분을 하여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도록 각 시·도로 안내 ('18.5.28)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6.2.3.>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6.2.3.>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3.6.7., 2016.2.3.>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 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11.6.7.>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5.3.27., 2016.2.3.>

## 4

##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 Q1. 유흥주점 허가취소 장소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가능 여부

성매매알선행위(2차)로 영업허가 취소된 유흥주점이 있던 같은 장소에 영업신고 업종인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1항 제한사항을 적용받는지?

- ㉞ 「식품위생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행위로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유흥주점영업자가 식품접객업 영업 중 허가대상 영업을 아닌 영업신고 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7조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18.>

1. 해당 영업 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4.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5.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6.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7.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8.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6.7.>

1.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제44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75조제1항 제18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 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75조제1항 제18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3.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제4조 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75조제1항 제18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5.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5 제39조(영업 승계)

### Q1. 영업자가 타인으로 변경될 시 지위승계 대상 여부

영업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승계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영업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영업신고증,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영업자가 A에서 B로 변경되는 경우, 상기 절차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Q2. 위임인이 지위승계 시 신분증명서에 자필 서명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위승계 시 위임자신분증 사본에도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 Ⓢ 「식품위생법」 상 지위승계 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Q3. 지위승계 위임인의 범위

저의 지인이 식당을 인수받아서 제가 지인 대신해 시청에 신고하러 갔습니다. 제가 위임인이라면 신고인란에 지위승계 받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저의 이름을 적는게 맞는건지요? 그렇다면 영업자 지위승계신고가 만약 허위 등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요?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의 신고인란에는 대리인이 아닌 승계를 받는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에서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Q4. 영업시설의 전부란

「식품위생법」 제39조에는 절차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해야 한다고 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영업시설의 전부의 의미는 영업소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영업소 건물만이 아니라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설비와 기구 전부를 「국세징수법」 압류재산 매각절차에 따라 인수해야 하는 것인가요?

- ☞ “영업시설의 전부”는 그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작업장, 급수시설, 창고 등 식품위생법 상 시설기준에서 정하는 모든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영업권 지위승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에 의해 건물만이 아닌 영업 시설 전부를 인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제39조(영업 승계)** 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6.7., 2016.2.3.,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면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 Q1.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회수한 경우 행정처분 감면 대상 해당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제1항제3호를 위반한 업소가 제품 유통 중에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회수를 진행하였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처분(처분기준 : 영업정지 15일)을 감면할 수 있나요?

- Ⓢ 「식품위생법」 제45조는 유통 중인 식품의 부적합한 내용을 인지하고 스스로 자진회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질의하신 사안과 같이 영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제품이 최종 제품에 일부 혼입된 것을 인지하고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에 준하여 자진회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라면 행정처분 감면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 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2조의2 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 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회수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 하여야 하며,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6.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식품등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75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 식품등·회수계획·회수절차 및 회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 7

## 제51조 및 제52조(조리사 및 영양사)

## Q1. 장기요양기관에 고용된 조리원의 조리사 면허 여부

50인 이상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조리원 채용에 있어 모든 조리원은 조리사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 ☞ 「식품위생법」 제51조 및 제52조는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으로 집단급식소 내에서 조리를 하는 모든 직원이 영양사 또는 조리사 자격증을 갖추도록 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따라서 집단급식소 내에서 영양사, 조리사가 근무하여 법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면 「식품위생법」 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 Q2.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가 있는 경우로서 조리사 고용 같은의 식수인원 기준

식수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는 의무 고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소지한다면 별도 조리사 고용 없이 겸직이 가능한가요?

- ☞ 「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하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단급식소의 인원(100인 이상 여부)과 관계없이 제5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라면 별도로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Q3. 영양사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인력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양사가 출산휴가를 가게 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영양사를 별도로 고용하여야 하나요?

- ㉞ 「식품위생법」 상 영양사가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대체인력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가 장기적으로 자리를 비워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영양사를 두지 않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해당 기간 동안 당해 영양사의 직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는 영양사를 별도로 고용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Q4. 영양사 직무 범위

저는 영양사로, 집단급식소에서 급식관리, 배식관리, 식단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급식소 측에서 인사 노무 업무까지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법적 직무에 해당하는건가요?

- ㉞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하는 영양사는 「식품위생법」 상 인사 노무의 의무는 없습니다.

### Q5.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대상이 아닌 곳의 영양사, 조리사의 고용 여부

식수인원인 30인으로, 50인 이하여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생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식수 인원이 30인인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도 영양사 및 조리사를 고용하여야 하나요?

- ㉞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제51조, 제52조에 따라 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하인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대상’ 및 ‘조리사, 영양사 의무고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를 한 경우라면 조리사·영양사 고용에 대한 의무가 부여됩니다.

**Q6. 조리사 영양사 미고용 시 처벌**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로 고용하여야 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 및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㉞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식품위생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 조리사 및 영양사를 의무로 고용하여야 하나 고용하지 않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같은 법 제9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7. 영양사, 조리사 미고용에 따른 처벌대상**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급식인원 100인 이상 산업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위탁급식영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위탁급식을 운영할 경우 (계약상 위탁급식영업자가 영양사와 조리사 고용하기로 함) 위탁급식영업자가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고 영업 중 적발되었을 경우 행정처분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㉞ 「식품위생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1회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 산업체의 경우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회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산업체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지 않은 경우 계약에 따라 위탁급식영업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더라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영양사 및 조리사 고용의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처벌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제51조(조리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1.6.7., 2013.5.22.>

1.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6.7.>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제52조(영양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1.6.7., 2013.5.22.>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6.7.>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 8

##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Q1. 시정명령 처분 승계여부

저는 지위승계를 통하여 2016.10.31일 휴게음식점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 안에 신규교육을 받지 않아 처분통지서를 받았고, 구청에서는 전 영업주가 신규위생교육을 받지 않아 시정명령 처분 받은 것이 1년안에 있다고 하며 저에게 2차 처분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가 타당한 처분인가요?

- ㉞ 인수 이전 영업자가 위생교육 미이수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대한 2차 위반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Q1. 기타식품판매업 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로 인한 과징금처분 시 기타식품판매업 내 타 영업매출은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의 기타식품판매업소 내에는 축산물판매업, 제과점 등의 영업신고가 되어 있어 각각의 영업장에서 축산물과 김밥 등을 취급할 경우, 동 매장들의 매출금액 또한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하나요?

- ☞ 기타식품판매업소에 대한 과징금 산정을 위한 매출금액의 경우, 타 영업을 제외하고 기타식품판매업 영업 행위에 해당하는 식품 판매와 관련된 매출금액을 과징금의 산정기준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Q2.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 부과 시 1차산물인 야채, 과일의 매출 또한 과징금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같음하여 부과된 과징금 처분 시 야채, 청과 등과 같은 자연산물 또한 과징금 산정 시 매출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나요?

- ☞ 기타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같음하는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는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장 내에서 영업행위에 해당하는 ‘식품(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로서 농·수산물, 주류 등을 포함)’의 매출액에 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Q3. 3개의 제품이 한 페이지 내 과대광고로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 시 과징금 부과 산정 방법

과·채주스 A,B,C를 한 페이지에서 광고하면서 A제품에 대한 광고가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 산정방법은?

〈예시〉

- 단품가격은 5,000원으로 전부 동일
- 세트상품(D)는 A, B, C를 하나로 묶어 12,000원으로 판매
- A 1개, D 1개가 판매된 상황

- ㉞ 문제되는 제품 A는 단품(5000원) 1개와 세트1개(3개 구성으로 12000원)의 구성품 중 1개 총 2개가 판매되었으며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팔 때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하므로 단품가격 5000원에 세트판매로 변동된 가격 4000원을 더한 가격을 과징금으로 부과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 Q4. 지위승계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

업소는 금년에 영업자 지위승계 된 업소로서 지위승계 신고 이후 양수인의 부주의로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과징금 산정 시 신규 사업으로 간주하여, 지위승계 후 일별·월별 등 매출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지위승계일부터 실영업시작일까지 매출금액없음)

지위승계일 2017.7.20/ 실영업 시작일 2017.8.10/ 발생일(위반일) 2017.8.15/  
영업중단일 2017.8.17/ 처분사전통지 2017.8.24

- ㉞ 영업장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므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법령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3.7.30., 2013.8.6.>

1. 삭제 <2013.7.30.>
2. 제3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와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 귀속시키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시·도지사는 제91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 10 제84조(위반사실 공표)

### Q1. 시정명령 처분사항의 공표 여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을 시에 지자체에서는 시정명령에 대한 것은 시군구의 홈페이지나 식품안전나라에 게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 ☞ 시정명령(법 제71조) 처분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는 사항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범위)에 따라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Q2. 위반사실 공표 기간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공표)에 공표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영업정지기간만 공표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자치행정 관할 시·군에서 임의로 공표기간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는지요?

- ☞ 공표 기간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을 하는 해당 관청에서 공표 기간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제84조(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2조,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1 제88조(집단급식소)

### Q1. 집단급식소 특정다수인의 범위(1)

집단급식소 운영시 특정다수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④ 특정다수인을 「식품위생법」 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식품안전관리 지침'의 '집단급식소의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정다수인'은 집단급식소 시설(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Q2. 집단급식소 특정다수인의 범위(2)

시청 내에 위치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가 시청 내에 설치된 집단급식소인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나요?

- ④ 구내식당은 직원 등 특정 다수인을 급식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소수의 민원인 및 방문객 등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다수의 외부인 등 불특정 다수인(도서관 이용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Q3. 집단급식소 특정다수인의 범위(3)

집단급식소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이용자 범위가 궁금합니다. 소속회사가 같지 않더라도 같은 건물 내 이용자라면 가능한가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건물주가 아닌 저희 회사 사장님입니다.

- ㉞ 특정다수인의 범위를 「식품위생법」 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집단급식소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정다수인’은 집단급식소 시설(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 건물에 입주하였으나 귀사와 계약한 회사의 소속이 아닌 타 회사의 직원(같은 건물, 다른 건물 모두)은 특정다수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귀사는 회사 직원이외의 타 회사 직원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동일한 건물에 입주한 타 회사의 직원이 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 [별지 제68호 서식]’의 ‘운영 공동 관리 여부’란에 그 내용을 체크하여 공동으로 급식 제공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Q4. 집단급식소 1회 급식인원 산정기준

집단급식소의 1회 급식인원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㉞ 집단급식소의 1회 급식인원에 대한 기준은 최근 1개월 동안 실제 배식일을 대상으로 하고, 1일 조·중·석식 중 가장 많은 급식인원을 평균하여 ‘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를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예시) 1개월 중 3일(월, 수, 금)만 급식하고, 월요일은 조식이 80명으로 가장 많고, 수요일은 중식이 40명으로 가장 많고, 금요일은 석식이 40명인 경우:  
 $80+40+40/3 = 54$ 명으로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함 .

### Q5. 집단급식소 이동배식 가능 여부

산업체로, 1공장, 2공장, 3공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공장에 집단급식소가 있을 경우 1공장 집단급식소에서 조리된 급식을 2공장, 3공장으로 냉장 탑차로 이동하여 배식할 수 있나요?(차로 10분거리)

- ㉞ 집단급식소에서 조리된 음식의 배식은 집단급식소로 설치·운영 신고 된 장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차 오염 및 음식물 중 미생물 번식에 의한 식중독 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외부로의 이동 배식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Q6. 집단급식소 조리실 공사기간동안 타 집단급식소로부터 급식을 받아 배식 가능 여부

집단급식소 조리실의 공사로 인해 급식이 불가한 경우, 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한 급식을 받아 배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㉞ 집단급식소에서 조리된 음식의 배식은 집단급식소로 설치·운영 신고 된 장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차 오염 및 음식물 중 미생물 번식에 의한 식중독 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상시적으로 조리음식을 외부로 이동하여 배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단급식소 조리실 시설공사로 인하여 조리실 사용이 불가한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소로부터 표시 완제품을 받아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일반음식점 등에서 조리된 음식을 별도의 공간(신고되지 않은 장소)으로 배달의 형태로 가져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7. 집단급식소에서 도시락 형태로 급식 제공 가능 여부**

집단급식소 내 한 코너가 도시락을 컨셉으로 운영 중입니다. 현재는 일회용기가 아닌 일반 도시락 식기에 제공하는데, 향후 일회용기로 식기를 변경해서 외부 반출이 가능한 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나요?

- ☞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내에서 급식메뉴의 일환으로 도시락 형태(일회용기)의 메뉴를 편성하여 제공하는 행위(테이크아웃 형태 포함)는 가능하나, 교차 오염 및 음식물 중 미생물 번식에 의한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면적 내에서 취식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Q8. 학원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대상 여부**

집단급식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원 등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등에서 도시락 등을 상시적으로 납품받아 급식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집단급식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원 등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 조리장, 급수시설 등을 설치한 후, 특정 다수인에게 1회 50명이상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급식시설 등을 갖추고 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음식을 납품받아 급식을 대체하는 경우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Q9. 아파트 내 입주인을 위한 식당 운영 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대상 여부

외부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아파트 단지의 주민복지시설에서 아파트 시설관리 직원과 입주인만을 대상으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며 음식 제공이 가능한가요?

비용정산 방식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통해 월 단위 일괄 수금한 후 당사에는 최소한의 시설유지관리비(운영비, 재료비, 인건비 등)에 대해 지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 ㉞ 아파트 시설관리 직원과 입주인만을 대상으로 주민복지 시설(급식소)의 유지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받으면서 1회 50명 이상에게 음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 Q10. 교정시설, 소년원, 출입관리소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대상 여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등에게 급식을 하는 설비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나요? 또한, 교정시설과 유사한 소년원, 출입국관리소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 ㉞ 질의하신 교정시설, 소년원, 출입국관리소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시설로서 식품위생법의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고, 각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용자 급양관리 지침»,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11. 군부대 및 의경부대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대상 여부**

급식인원이 50인이 넘는 군부대 및 의경부대의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대상인가요?

- ☞ 의경부대는 국가방호 업무를 하는 특수목적의 조직체로 부대 내에 있는 급식시설은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으로 「식품위생법」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경찰복지법)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무경찰대법)에 근거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의 급식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군부대는 「군인복지법」에 따른 「군인급식규정」에 따라 급식관리 기준 등을 적용하며 특수목적 조직체로 국방보안, 산간벽지, 민간인 출입제한 등의 사유 및 전·평시 작전개념을 적용하여 운영하므로 「식품위생법」의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12. 50인 이하의 군부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대상 여부**

50인 이하 군부대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대상 여부?

- ☞ 질의하신 군부대의 경우 「군인급식규정」에 따라 별도의 급식관리 기준 등을 적용하며 특수목적 조직체로 국방보안, 산간벽지, 민간인 출입제한 등의 사유 및 전·평시 작전개념을 적용하여 운영하므로 「식품위생법」의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1회 급식인원이 질의하신 내용의 50인 ‘이하’가 아닌 ‘이상’이더라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13. 50명 이상의 기업체에서 출장뷔페로 급식 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대상 여부**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이며 기업체가 영세하여 식사를 할 공간은 있으나 조리 및 가스 시설이 없어 해당 장소에서 이동급식(케이터링)업체를 통하여 직원들이 식사를 할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

- ㉞ 당사 내에서 전혀 음식물을 조리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등 외부 배달업체에서 출장뷔페 등의 형태로 음식물을 받아 50인 이상의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없이 배달을 받아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14. 50인 이상의 학원에서 출장뷔페로 급식 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대상 여부**

50인 이상의 원생이 있는 학원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지 않고 외부 배달업체에 음식을 배달시켜 섭취하는 경우 학원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해야 하나요?

- ㉞ 학원 내에서 전혀 음식물을 조리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등 외부 배달업체에서 출장뷔페 등의 형태로 음식물을 받아 50인 이상의 원생이 식사를 하는 경우, 해당 학원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없이 배달을 받아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15. 집단급식소 내 완제품 비치 판매 가능 여부**

집단급식소 내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만든 도시락을 비치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 ㉞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표시 완제품(도시락)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별도 영업신고 없이 가능할 것이나, 집단급식소 내에서 완제품을 판매하는 공간은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하여 하여야 합니다.

- \* 분리 : 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 구획 : 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 구분 : 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Q16. 집단급식소 내 라면 즉석조리기 사용 가능 여부**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급식 외 라면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실제 라면을 조리하는 인원 확보가 어려워 셀프로 라면을 조리할 수 있는 기계를 비치하려고 합니다. 동 경우 집단급식소 내에 라면조리기를 설치 후 고객이 직접 조리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㉞ 집단급식소에서 급식 메뉴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완제품 라면을 제공하고, 고객이 기계를 이용하여 스스로 조리하여 섭취하는 경우라면 별도 영업신고 없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에서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리·제공한 식품(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급식의 일환으로 제공된 식품인 완제품 라면을 보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Q17. 집단급식소 종료신고 가능 여부

금년 1월부터 10월 현재 어르신 현원이 계속 45명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 운영에 대한 영양사, 조리원 추가채용 등 인건비 상승에 대한 어려움으로 차라리 직원들에게는 식비를 지급하여 본인들이 알아서 식사를 해결하도록 하고 요양원 어르신들(약 45명)만 식사를 제공하여 집단급식소 설치를 중단하려 합니다. 종료신고가 가능할까요?

- ㉞ 최근 1회 급식인원이 50인 미만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종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Q18. 집단급식소가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처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 행정처분이 있는지?

- ㉞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집단급식소가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시설을 개수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 법령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5.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2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 제 2 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관련 질의답변



## 1

##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 Q1. 유흥종사자로 외국인 고용 가능 여부

외국인이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로 근무할 수 있나요?

- ☞ 「식품위생법」 상 유흥종사자를 내국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Q2. 남자도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흥종사자 중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근무를 하는 댄서, 가수 및 악기연주자, 무용을 하는 자, 만담 및 곡예를 하는 자, 유흥사회자, 유흥디제이들이 유흥접객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남성으로서 단란주점영업장 및 유흥주점영업장에서 근무하는 댄서, 악기연주자, 무용수, 곡예자, 사회자, DJ 등은 유흥종사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녀자’란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음.

## 관련 법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 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2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Q1. 감자, 호박 등 농산물을 세척, 절단하여 비닐포장 후 판매 시 영업신고 대상 여부

감자, 호박 등의 농산물을 세척, 절단하고 투명한 비닐에 포장하여 판매가 가능한지, 혹시 판매가 가능하다면 별도의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 ④ 질의하신 제품이 감자, 호박 등의 농산물을 세척 → 박피 → 절단 → 포장한 것으로 감자와 호박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고, 소비자가 가열 공정을 거쳐서 섭취하는 등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이라면 ‘농산물’에 해당되며, 동 경우 「식품위생법」 상 별도 영업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Q2. 수확한 블루베리를 그대로 급속냉동하여 판매 시 영업신고 대상 여부

블루베리를 수확 후 꼭지제거나 세척 과정 등 별도 공정 없이 그대로 포장에 담은 후 급속 냉동실에 넣은 후 고객 주문이 들어오면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판매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 ④ 질의하신 제품이 블루베리 100%를 “꼭지제거” 및 “세척 공정” 없이 원형 그대로를 포장하여 냉동한 것으로 소비자가 바로 섭취하기보다는 세척 후 섭취하는 제품은 “농산물”에 해당되며, 동 경우 별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및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진달래 꽃잎을 따서 건조 후 꽃차용으로 판매 시 영업신고 대상 여부**

직접 진달래 나무의 꽃잎을 직접 따서 그늘에서 건조 후 유리병에 담아 꽃차용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 ㉞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진달래(*Rhododendron mucronulatum Turcz.*) 꽃잎100%로 하여 건조 후 유리병에 담은 것으로 소비자가 물에 침출하여 그 여액을 음용하는 제품이라면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제4. 9. 음료류 9-1 다류 4) (1) “침출차”에 해당하며, “침출차”를 제조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각 영업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Q4. 당근, 양파, 피망 등을 세척, 절단하여 판매 시 영업신고 대상 여부**

당근, 양파, 피망 등을 세척 후 단순 절단 작업을 해서 포장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동 경우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 ㉞ 식품의 유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배합비율, 상세한 제조공정, 섭취방법, 용도 등 제품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므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식품의 유형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당근, 양파, 피망 등을 세척 후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단순 절단하여 다른 제품의 원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면 “농산물”에 해당되며, 이를 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에 원료로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상 별도의 영업 등록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집단급식소에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절단하였거나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 15. 15-7 4) (1) “과·채가공품”에 해당되며, 이를 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에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Q5. 수확한 딸기를 꼭지만 제거 후 급속 냉동하여 판매 시 영업신고 대상 여부

농가에서 수확한 딸기를 세척 과정 없이 꼭지만 제거한 후 급속 냉동 하고, 고객 주문이 들어오면 스티로폼 박스에 아이스팩을 동봉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별도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 ☞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딸기를 단순히 냉동한 것으로 소비자가 세척, 가열조리 등을 거쳐 섭취하는 제품은 “농산물”에 해당하며, 소비자가 별도의 세척 또는 가열조리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 15. 15-7 4) (1) “과·채가공품”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농산물’로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상 별도 영업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나, ‘과·채가공품’으로 제조·가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 2. 23)에 “냉동·냉장식품의 보존온도는 이 공전에서 따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냉동은  $-18^{\circ}\text{C}$  이하, 냉장은  $0\sim 10^{\circ}\text{C}$ 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 6. 12)에 “냉동 또는 냉장제품의 운반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차량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배달·판매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6. 천일염을 이물선별, 건조하여 판매 시 영업신고 대상 여부

염전에서 생산하는 천일염을 납품받아 세척을 하지 않고 이물 선별만 해서 건조할 경우 식품위생법 상 별도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 ☞ 질의하신 제품이 천일염을 원료로 이물 선별 - 건조한 제품이라면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 12. 12-6 4) (1) “천일염”에 해당되며, 이는 자연산물에 해당되므로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및 품목제조보고 없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Q7. 직접 양봉하여 수확한 꿀 판매 시 영업신고 대상 여부**

직접 양봉해 수확한 꿀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려고 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 ㉞ 현재 벌꿀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하여 숙성된 것’을 의미하며 ‘자연산물(봉산물)’에 해당되므로, 직접 수확한 ‘봉산물’을 인터넷에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상 별도 영업등록(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하는 벌꿀은 현행 제4. 21. 21-1 4) (2) “벌꿀”의 규격 및 제 2. 3. 8)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별표 5] 식품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Q8. 어업인이 수산물을 소금과 혼합하는 등 절여서 공장 등에 판매할 경우 영업신고(등록) 대상 여부**

어업인 또는 개인이 멸치, 까나리, 곤쟁이 등을 소금과 혼합하여 드럼통 등에 절인 후 액젓 공장 및 영업자에게 판매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 ㉞ 질의하신 제품의 전체 원재료명, 원재료 배합비율, 상세한 제조공정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멸치, 까나리, 곤쟁이 등에 소금을 단순히 혼합하여 발효,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제품이라면 “수산물”에 해당하며 동 경우 「식품위생법」 상 별도 영업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려는 경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임.

다만, 질의 제품이 멸치, 까나리, 곤쟁이 등에 소금을 혼합하여 발효, 숙성 과정을 거친 것으로 생물기준 60%이상의 제품이라면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 19. 19-2 4) (1) “젓갈”에 해당되며, 젓갈을 제조·가공하여 공장 등으로 유통·판매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후, 등록관청(시·군·구)에 제조품목에 대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Q9. 고등어의 내장, 지느러미 등을 제거, 절단 후 진공포장하여 냉동 판매 시 영업신고 대상 여부

고등어의 내장이나 지느러미 등을 제거하여 절단한 후 진공포장하여 일반음식점에 냉동상태로 납품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 ㉞ 질의하신 제품이 고등어 100%를 원료로 비가식부 제거(내장, 지느러미) - 절단 - 진공포장 - 냉동한 것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제품이라면 “수산물”에 해당되며, “수산물”을 일반음식점에 납품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영업등록(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10. 낙지를 내장제거, 세척 후 포장 판매 시 영업신고 대상 여부

국내산 낙지를 내장만 제거하여 세척한 후 2kg씩 포장을 하여 판매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 ㉞ 질의하신 제품이 낙지의 내장만을 단순히 제거한 것이라면 “수산물”에 해당함을 알려 드리며, 이를 포장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상 별도의 영업 등록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려는 경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Q11. 냉동 문어를 해동 후 내장제거, 절단 후 판매 시 영업신고 대상 여부**

냉동문어를 해동 후 내장제거하고 절단해서 스티로폼박스에 담아서 냉장으로 납품할 경우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 ㉞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6-154호, '16.12.29) 제2. 4. 17)에 “냉동수산물은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냉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다만, 냉동수산물을 해동하여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고 품질이 유지되도록 기체치환 포장(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MAP)한 경우로써, 냉동포장완료일자,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 유통조건에서의 유통기한(냉동제품으로서의 유통기한 이내)을 별도로 표시한 경우는 정해진 유통기한 이내에 유통할 수 있다. 이때 해동된 수산물을 재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제품이 ‘냉동문어’를 “해동 → 내장제거 → 문어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절단 → 스티로폼 박스에 담은 것”으로 소비자가 가열조리하여 경우라면 “수산물”에 해당하며 「식품위생법」 상 별도 영업등록(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나, 냉동문어를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냉장으로 유통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려는 경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1. 삭제 <2011.12.19.>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삭제 <2011.12.19.>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
6. 제21조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
7. 제21조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8., 2009.11.26., 2010.11.19., 2012.7.19., 2013.3.23., 2013.10.16., 2014.1.28., 2015.12.22., 2016.1.22.>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어유(간유) 가공업, 냉동·냉장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3. 삭제 <2012.11.27.>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하거나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Q1. 제조품목 추가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 여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로 두부를 제조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콩국물을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변경신고 대상인가요?

- ㉞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자가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중 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대상이므로, 귀하의 경우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Q2.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 여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할 때 워터파크 번지수를 근거로 해당 소재지인 "00시, 00군, 00면, 00로 200번지"로 영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동용 매대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이 영업 신고한 동일 번지 같은 층에서 위치 이동을 하여 운영시에도 소재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 ㉞ 워터파크 번지수를 소재지로 하여 이동용 매대에 대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고, 동 영업신고한 소재지 내에서 이동용 매대가 위치를 이동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16.7.26.>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삭제 <2011.12.19.>
6.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즉석 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삭제 <2011.12.19.>
8.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가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9.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 4

## 제26조의3(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 Q1.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대상 여부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남구에서 북구로 이전하는 경우 소재지 이전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 「식품위생법」 상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고 영업 중에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Q2. 추가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신규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 변경등록 대상 여부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추가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신규 품목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등록사항 변경없이 제조할 수 있나요?

- ☞ 추가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변경등록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새롭게 제조·가공하는 품목에 대하여 품목제조보고하고 식품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제26조의3(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할 때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영업소의 소재지
2.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첨가물을 말한다)을 제조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1.12.19.]



5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Q1. 독성이 손질된 복어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복어조리사 고용 여부**

일반음식점에서 독성이 손질되어 수입된 냉동 복어를 조리 판매할 경우 복어 조리사를 고용하여야 하나요?

- Ⓢ 현행 「식품위생법」 상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하므로 귀사에서 독이 제거된 냉동 복어를 사용하여 조리·판매할 경우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조리사는 ‘복어 조리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복어조리사 이외의 조리사 면허증을 가진 자를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 1) 생복 취급의 경우, 일반조리사가 아닌 ‘복어조리기능사’를 고용함이 타당
  - 2) 다만, 복어의 독성 성분이 제거된 복어제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복어조리기능사가 아닌 일반조리사 고용 가능

**관련 법령**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이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30.]

※ 참고로, '17.12.12일자로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란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식품접객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와 같이 개정되었으며, 동 규정의 시행일은 '19.12.13일입니다.

## 6

##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Q1. 퇴사한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시 과태료 처분 대상 여부

퇴사한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영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나요?

- ㉞ 건강진단대상자인 종사자가 현재 퇴사하여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 Q2. 한 제품에 3가지의 영양성분 표시가 위반인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하나의 제품에서 영양성분 표시량 위반사항이 3개인 경우, 영양성분마다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 ㉞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7조 관련 [별표 2] 2.나.4)에 따라 영양성분의 실제측정 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허용오차범위를 넘은 경우라면 영양성분 별로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각각 총 1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함이 타당합니다.

### Q3. 품목제조보고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 기준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은 빵류 등 11개 품목을 생산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품목별 과태료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을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태료 상한액 500만원을 부과해야 하나요?

- ④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6.호에 따라 법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11개 품목에 대해 각 품목별로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Q4. 품목제조보고 상 누락된 원료를 첨가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품목제조보고에 누락된 원료를 첨가할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인가요?

- ④ ‘현 품목제조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원료\*를 제조·가공에 사용하려는 경우 품목 제조보고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나, 변경보고를 하지 않고 당해 원료를 사용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2]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한함

**Q5.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가 건강진단 위반으로 적발되어 당일 8근무시간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식품위생법」제10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별표2] 1. 일반기준 나목의 2)“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 ㉞ 행정질서별인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이나 사회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 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에 해당합니다.

또한, 과태료 감경 규정의 목적은 과태료의 신속한 납부, 당사자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행정제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건강진단 위반으로 적발되어 당일 8근무시간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할 의지(행정 목적을 달성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감경 대상에 해당됩니다.

**Q6. 과태료 처분 차수 기준(1)**

호박고구마말랭이 품목제조 미보고로 2016.8.12. 적발하여 과태료 200만원 부과하였고, 같은 업체에서 꿀고구마말랭이의 품목제조미보고로 2017.3.28. 적발하였을 때, 2차 적발된 품목이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이 아닐 경우,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되었으므로 2차 위반처분 해야 하나요? 다른 품목이므로, 1차 위반처분 해야 하나요?

- ㉞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식품품목제조 미보고로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른 날, 다른 품목의 품목제조 미보고로 적발된 경우 최근 2년간 ‘품목제조 미보고라는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2차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Q7. 과태료 처분 차수 기준(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에 의해 같은 관할 구역에서 3개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영업자가 해당연도에 1개 업소만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3개 업소 모두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위생교육을 모두 받지 않았을 경우에 영업장 3개에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개 영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요?

-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동 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제1호에 의하여 해당 연도에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허가·신고·등록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동 영업에 대해서도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은 같은 관할 구역 내 같은 업종에 대해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같은 관할 구역에서 일반음식점 3개를 운영하고 있는 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3개 영업장에 대해 모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8. 휴업한 영업자의 위생교육 미수료 과태료 대상 여부**

2016년 부과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과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총매출금액이 0원(매출없음)으로 확인되는 등 2016년에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휴업상태의 기존영업자가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처분 가능한가요??

- ㉞ 「식품위생법」 제41조의 식품위생교육은 영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영업자로 하여금 식품위해사고를 예방토록 하는 차원에서 매년 위생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영업을 재개하게 되는 경우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영업에 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6년 부과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과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총매출금액이 0원(매출없음)으로 확인 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위생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 Q9. 행정청의 실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취소 가능 여부

기타식품판매업소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판매 행위로 “식파라치”로 부터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기관이 위반업소가 “자유업종”에 해당하는 소규모 업소로 잘못 판단하여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27]를 적용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납부가 완료된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고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나요?

- ④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전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1986.2.25 선고 85누664)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규정에 따라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판례 및 규정에 따라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직권으로 취소하고 정당한 처분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 처분은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5.12.30.]

[별표 2] <개정 2017. 12. 12.>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1호	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1항제1호			
1) 영양표시를 전부 하지 않은 경우		200	400	600
2) 영양성분 표시 시 지방(포화지방 및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3) 영양성분 표시 시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	40	60
4)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허용오차범위를 넘은 경우				
가)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50	100	150
나) 실제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20	40	60
다.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하지 않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2			
1)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표시 상의 나트륨 함량과 다른 값을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사항에 표시한 경우		100	200	300
나) 그 밖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10	20	30
라. 영업자가 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 제2항 제1호의3	300	400	500

마. 삭제 <2016. 7. 26.>				
바. 법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3호	200	300	400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1호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0	40	60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10	20	30
아. 법 제40조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1호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50	100	150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30	60	90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30	60	90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0	40	60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100	200	300
자. 법 제41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1호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0	40	60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10	20	30
차. 법 제41조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 제2항제1호	20	40	60

<p>카.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p>	<p>법 제101조 제3항제2호</p>	<p>10</p>	<p>20</p>	<p>30</p>
<p>타.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p>	<p>법 제101조 제2항제4호</p>	<p>30</p>	<p>60</p>	<p>90</p>
<p>파.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101조 제3항제3호</p>			
<p>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p>		<p>300</p>	<p>300</p>	<p>300</p>
<p>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p>		<p>100</p>	<p>200</p>	<p>300</p>
<p>하. 법 제48조제9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p>	<p>법 제101조 제2항제6호</p>	<p>300</p>	<p>400</p>	<p>500</p>
<p>거.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101조 제3항제4호</p>	<p>30</p>	<p>60</p>	<p>90</p>
<p>너. 법 제4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 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p>	<p>법 제101조 제3항제5호</p>	<p>100</p>	<p>200</p>	<p>300</p>
<p>더.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p>	<p>법 제101조 제2항제7호</p>	<p>20</p>	<p>40</p>	<p>60</p>
<p>러. 법 제74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법 제101조 제2항제8호</p>	<p>200</p>	<p>300</p>	<p>400</p>
<p>머. 법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p>	<p>법 제101조 제2항제1호</p>			
<p>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p>		<p>100</p>	<p>200</p>	<p>300</p>
<p>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p>		<p>200</p>	<p>300</p>	<p>400</p>
<p>버. 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p>	<p>법 제101조 제2항제9호</p>	<p>100</p>	<p>200</p>	<p>300</p>
<p>서. 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p>	<p>법 제101조 제2항제10호</p>			

1)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집단급식소(법 제86조제2항 및 이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의 조사 결과 해당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이 식중독의 발생 원인으로 확정된 집단급식소를 말한다)의 설치·운영자	300	400	500
2)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	100	150
3)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따르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50	100	150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50	100	150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 제 3 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관련 질의답변



## 1

##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 Q1. 위생모 착용기준

식품 조리 종사자가 위생모 착용 대신 머리를 묶고 반다나를 착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 질의하신 헤어밴드 등과 관련하여 위생모의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및 개인위생관리에 대하여 위생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준수하는 범위 내(음식물 제조 시 머리카락 등이 유입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사용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Q2. 마스크 착용 기준

집단급식소에서 배식 등 조리종사자가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나요?

- ☞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하여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타액으로 인한 교차오염 예방을 위하여 식품 조리·배식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식품안전정책의 일관된 수행을 위해 마련된 '식품안전관리지침'에서 식품의 조리 시 마스크 착용여부를 지도·권장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 법령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2.1.17.>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제2조 관련)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제8조(허위·과대광고)

### Q1.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원재료 효능효과 광고 가능 여부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의 원재료에 대한 효능·효과에 대한 광고 또한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나요?

- Ⓣ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효능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2. '해독주스' 또는 '디톡스주스' 표현 가능 여부

소비자가 검색포털에서 '디톡스', '해독주스'를 검색할 시 당사 제품이 검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나요?

- Ⓣ 소비자가 검색할 때 검색이 되도록 하거나, 검색포털 광고 시 디톡스, 해독주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 Q3. '생리통완화' 표현 가능 여부

산수유즙을 판매하면서 생리통완화, 부인병, 수족냉증 완화 등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나요?

- Ⓣ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해 “생리통완화,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 부인병, 수족냉증 완화” 등의 표현을 하시는 것은 소비자로부터 하여금 해당 제품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 Q4. '당뇨개선', '당뇨환자를 위한' 등 표현 가능 여부

기타가공품을 판매하면서 '당뇨 개선 및 예방에 도움', '당뇨환자를 위한 잡곡', '당 조절이 가능한 잡곡', '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잡곡'등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 ㉞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이 아닌 일반가공식품(기타가공품)에 '당뇨 개선 또는 예방에 도움된다', '당뇨 환자', '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특수의료용도등식품(당뇨환자용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 Q5. 블로그, 카페, SNS 상 식품 리뷰를 식품판매사이트에 링크 가능한지 여부

블로그나 카페, SNS에 해당 상품에 대해 쓴 리뷰(맛이 좋다, 배송이 빠르다 등)를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링크하는것이 가능한가요?

- ㉞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기재한 리뷰 내용에 질병이나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허위·과대광고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에 해당하여 적절하지 않으나, 소비자의 리뷰 내용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등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고 단순히 맛이 좋다, 배송이 빠르다 등의 후기내용인 경우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링크하여 광고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Q6. 고객이 작성한 후기 허위·과대광고 범위 해당 여부

고객후기게시판을 운영하는 경우 자체가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에 해당하나요?

- ㉞ 고객 후기 내용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에 해당되므로, 영업자 또는 쇼핑몰운영자는 고객 후기게시판을 운영함에 있어 후기 내용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Q7. 특허 내용 광고 가능 여부**

일반식품에 특허받은 내용을 광고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 Ⓢ 식품 광고 시 해당 제품에 대한 특허 출원이 아닌 등록 사실을 광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특허 내용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특허를 광고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Q8. 다이어트 카테고리 내 음료를 인터넷을 통해 구분하여 판매 가능 여부**

음료를 인터넷에서 판매할 경우 다이어트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 Ⓢ 일반가공식품에 대하여 다이어트 식품 등의 카테고리로 구분하는 경우 일반가공 식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하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Q9. 숙취해소 등의 표현 가능 여부**

당사에서 판매하는 환에 대하여 '숙취해소', '간에 좋다' 등의 표현이 가능한가요?

- Ⓢ 일반식품에 대한 광고 시 “숙취해소에 좋다”라는 표현을 하거나, 음주전후 먹었을 때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실제 숙취해소의 효과가 있어야 하며, 제조자의 책임 하에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식품에 대한 광고 시 “간에 좋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에 해당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 Q10. '한정수량 00개' 표현 가능 여부

매진이 되어도 추가생산 없이 한정된 물량만을 생산한다는 의미로 일반식품 홈쇼핑 방송 중에 '한정수량 00개'와 같은 표현이 가능한가요?

- ㉞ 판매 방송 중 '한정수량 00개'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표현이 가능합니다.

### Q11. '00명 주문', '00명 동시주문 중', '00세트 판매 돌파', '전체수량 비상' 표현 가능 여부

홈쇼핑 식품방송 중, '000명 주문', '000명 동시주문 중', '000세트 판매 돌파', '전체수량 비상' 등의 표현이 가능한가요?

- ㉞ 판매 방송 중 '000명 주문', '000명 동시주문 중', '000세트 판매 돌파', '전체수량 비상' 이라는 표현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표현이 가능합니다.

### Q12. 식품첨가물의 광고 심의 절차

수입 식품첨가물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며 광고함에 있어 별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 ㉞ 「식품위생법」 상 일반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광고 심의절차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만, 특수용도식품의 경우 심의대상임.

**Q13. '식사대용', '한끼대용', '대체식' 표현 가능 여부**

일반식품에 "식사대용" "한끼 대용" "대체식" 등의 표현이 가능한가요?

- ㉞ 일반가공식품을 광고함에 있어 '식사대용', '한끼 대용', '대체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4. 농산물 광고 가능 여부(춘곤증을 이기는 음식)**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춘곤증을 이기는 음식'으로 표현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 ㉞ 귀하께서 농산물을 판매하시면서 “봄 춘곤증을 이기는 음식”으로 광고하시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5. '환우들이 많이 찾는', '면역력에 도움 되는' 표현 가능 여부**

차가버섯 추출분말 100%를 판매하며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차가버섯',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차가버섯', '환우들이 많이 찾는 차가버섯', '환우들에게 많이 알려진 차가버섯'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 ㉞ 차가버섯분말을 광고함에 있어 '면역력', '환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환우'란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환자'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함.

### Q16. 일반음식점 조리식품 효능효과 광고 가능여부

일반음식점에서 쌈채소를 제공하며, 쌈채소 효능에 '항암효과', '혈액순환', '성인병예방'과 같이 광고할 수 있나요?

- ㉞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서는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경우 동 조 제1항제2호·제5호·제6호·제12호 및 제13호에 불구하고 허위·과대광고로 보지 아니 하므로, 일반음식점에서 취식토록 제공하는 쌈채소를 광고함에 있어 '항암효과', '혈액순환', '성인병 예방'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허위·과대광고로 보지 아니 합니다.

### Q17. 발효마늘에 대하여 '피로회복', '음경의 해면체를 충만하게 한다' 등으로 광고 가능 여부

발효황금마늘에 대하여 '남성의 자신감회복', '체력증강 및 피로회복', '위액 분비 촉진', '정장 및 소화작용 촉진', '살균 및 항균작용', '항산화작용', '음경의 해면체를 충만하게 한다' 등으로 광고 가능한가요?

- ㉞ 일반가공식품 광고 시 “음경의 해면체 충만하게 하여 남자의 자존심회복에 도움, 피로회복에 도움, 위액 분비를 촉진하여 정장 및 소화작용 촉진, 살균 및 항균작용, 항산화 작용”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Q18. 흰강낭콩 함유 두유 광고 시 흰강낭콩 기사를 삽입하여 광고 가능 여부**

흰강낭콩이 함유된 두유를 판매하면서 인터넷 상세페이지에 흰강낭콩 중의 파세올라민이 체중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기사를 이미지화 해서 삽입할 수 있나요?

- ㉞ 두유(가공식품)을 광고함에 있어 기사를 발췌하여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두유의 원료인 흰강낭콩 및 파세올라민에 대하여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되어 광고에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Q19. 두류가공품을 '두유'로 판매하는 경우 허위·과대광고 해당 여부**

두류가공품을 '두유'로 칭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 ㉞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상 제4. 9. 9-5 “두유류”는 ‘대두 및 대두가공품의 추출물이거나 이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두유액, 두유, 분말두유 등’을 말하며, 원료 및 성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1) 두유액: 대두로부터 추출한 유액(대두고형분 7% 이상)을 말한다.
- (2) 두유: 두유액이나 대두가공품의 추출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대두고형분 4% 이상)을 말한다.
- (3) 분말두유: 두유 또는 조제두유를 건조하여 분말화한 제품(대두고형분 50% 이상)을 말한다.
- (4) 기타 두유: 두유에 과일·채소즙(과실퓨레 포함) 또는 유, 유가공품, 곡류분말 등을 가한 액상, 호상, 겔상의 것(대두고형분 1.4%이상)을 말한다.

상기 고시의 제4.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의 기준 및 규격, 1. 2) “두류가공품”은 ‘두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해당되지 아니한 식품 중 두류를 가공한 제품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식품유형이 ‘두유’ 등 두유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의 제품명으로 ‘OO 두유’ 표시를 하거나 ‘두유’로 광고하는 행위는 다른 식품의 유형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으로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 Q20. 식품제조·가공업소 내 인쇄물에 제품의 효능 광고 가능 여부

식품제조·가공업소 내에 제품에 효능에 관한 인쇄물을 부착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인지 여부?

- ②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품을 판매하면서 판매장 내 게시한 인쇄물에 해당 제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것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 Q21. 제과점의 원재료 효능 광고 가능 여부

제과점에서는 홍국쌀식빵을 판매하며, 원재료인 홍국에 대하여 '혈액 순환에 도움을 줌', '콜레스테롤 저감화에 도움을 줌' 등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제1호에서는 제과점영업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경우 동 조 제1항제2호·제5호·제6호·제12호 및 제13호에 불구하고 허위·과대광고로 보지 아니 하므로, 제과점(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광고 시 '혈액 순환에 도움을 줌, 콜레스테롤 저감화에 도움을 줌'으로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22. 가공식품의 원재료 중의 특정 성분 함유 사실 광고 가능 여부

쑥진액 제품을 판매하며 원재료인 쑥에는 "자세오시딘" 과 "유파틸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광고할 수 있나요?

- ② 쑥진액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인 '쑥'에 자세오시딘과 유파틸린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내용이 논문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인 경우라면 광고할 수 있습니다.

**Q23. 말린비트 광고 가능 여부**

말린 비트를 판매하며 "건강한 혈관을 위해 비트를 먹어보아요!", '혈관청소부 비트', '풍부한 비타민, 칼슘, 철분, 미네랄, 식이섬유로 가득한 레드비트'로 표현할 수 있나요?

- ㉞ 가공식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식품 및 그 원재료 또는 성분에 대하여 “건강한 혈관, 혈관청소부”의 표현을 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식품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비타민, 칼슘, 철분, 미네랄, 식이섬유가 가득한 레드비트, 함유”의 표현은 ‘가득’, ‘함유’ 등의 표현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Q24. 고객후기 중 질병명을 \*\* 등으로 가린 후 광고 가능 여부**

아래의 예시와 같이 질병명을 가린 고객의 후기를 광고에 활용하여도 되나요?

(예시) \*제품을 먹었더니 고\*\*에 확실히 좋은 것 같네요. (고혈압, 고지혈 등을 고\*\*으로 표시)

\*제품을 먹었더니 붓\*에 좋은 것 같아요 (붓기를 붓\*라고 표시)

\*제품을 먹었더니 다\*\*트에 좋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다\*\*트 라고 표시)

\*제품을 먹었더니 콜\*\*\*롤 수치 감소에 좋네요. (콜레스테롤을 콜\*\*\*롤 라고 표시)

- ㉞ ‘고\*\*’, ‘붓\*’, ‘다\*\*트’, ‘콜\*\*\*롤 수치 감소’ 등 특정 질병 명칭 또는 특정 효과 명칭을 일부 가린다하더라도 당해 광고문구 및 전반적인 광고 정황으로 하여 소비자가 ‘붓기’, ‘다이어트’,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등으로 유추할 수 있는 점이 있으므로 예시와 같이 특정 질병 명칭 및 특정 효과 명칭을 기재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 Q25. 상장 인용 광고 가능 여부

홈쇼핑으로 식품 광고 시 '전국 명과 대품평회 최우수 명예상 베이커리브랜드(일본 왕실주최)'를 인용하여 광고가 가능한가요?

- ④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이외에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인용하거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것은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해 상장은 「정부표창규정」, 「정부조직법」 등에서 규정하는 상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용한 광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Q26. 생식함유제품 광고 시 체험기 광고 가능 여부

생식함유제품 광고 시 고객후기(우유에 타먹으면 맛있다, 파우치로 되어 있어 간편하다, 파우치 디자인이 예쁘다 등)를 인용하여 광고 가능한가요?

- ④ 제품의 섭취편의성, 맛, 디자인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과대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의 고객 후기를 발췌하여 홈쇼핑에 광고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상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7. 어묵 판매 시 '최고급', '가장 좋은', ' 으뜸인' 표현 가능 여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어묵을 판매하며 '최고급', '가장 좋은', ' 으뜸인' 등의 수식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있나요?

- ㉞ “최고”, “가장 좋은”, “ 으뜸인”의 표현 가능 범위를 「식품위생법」 상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5호 나목에 따라 자기 자신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어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동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8. 과일퓨레에 '이유식' 표현 가능 여부**

영유아식품이 아닌 과일퓨레를 이유식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 ㉞ 과·채가공품 등 일반 가공식품에 대하여 “이유식, 아기간식”의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용도식품(기타 영유아식 등)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습니다.

**Q29. 질병의 효능·효과가 있다는 영상광고 가능 여부**

온라인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며 "\*\*\*\*제품은 혈관을 이십대의 것으로 돌려놓음으로써 모든 질병 예방,치유,역전할 수 있게 된다. 혈관을 확장하고 정상으로 복원 혈액순환과 적혈구 생성까지 돕는다.", " \*\*\*\*제품을 먹으면 빈혈에 큰 도움을 주고 개선해 준다.", "혈액순환이 잘된다는건 체온이 상승하고 그만큼 면역력이 증가하고 영양공급이 잘된다는 것이다. 즉, \*\*\*제품은 우리몸의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며 모든 질병으로 부터 벗어 날 수 있는 힐링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다." 등 내용의 영상을 게재할 수 있나요?

- ㉞ 판매자 및 카페 관리자가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모든 질병 예방, 치유, 역전, 혈관 확장, 복원, 혈액순환, 적혈구 생성, 빈혈에 도움, 면역력 증가”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①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8.19., 2012.1.17., 2014.5.9., 2015.12.31., 2016.2.4., 2017.1.4.>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37조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등록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3.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4.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6.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
  -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식품등에 대한 인증·보증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7.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나 "주문 쇠도" 등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9.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10.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광고

13.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② 제1항제2호·제5호·제6호·제12호 및 제1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2017.1.4., 2017.12.29.>

1.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8호가목·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소에서 조리·제공하는 식품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에서 제조·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2. 영 제25조제2항제6호 본문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2의2. 영 제26조의2제2항제6호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산 농·임·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메주·된장·고추장·간장·김치에 대하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표시·광고

4. 그 밖에 별표 3에 따른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 표시·광고

③ 법 제13조에 따른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2.1.17.]

## 3

##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Q1. 식품제조·가공 중 동결건조공정을 실험실 내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조과정 중 동결건조공정 시설을 실험실에 구비하여 실험실에서 동결건조 가능한가요?

- Ⓢ 동결건조공정에 사용하는 동결건조시설은 식품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실험실과는 분리되어야 하므로 실험실에 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업장 내에 비치 후 제조·가공하여야 합니다.

**Q2. 반려동물제품 제조 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 사용 가능 여부**

식품제조·가공업 작업장 내에서 반려동물용 음료 제조가 가능한가요?

-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므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제조시설로 반려동물용 음료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 Q3.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탁생산 범위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 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는 규정 중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 대한 범위가 있나요?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는 규정 중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라 함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당해 품목의 제조·가공시설을 갖추고 생산하며 일부 제조·가공공정을 타 식품 제조·가공업소에 위탁하려는 경우’이거나 ‘생산 필요량이 업체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일부 공정 또는 전 공정을 동일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타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다만, 2018년 식품안전관리지침 II. 2. 식품 위탁 제조·가공업체 관리 4.에 따라 위탁자가 위탁 생산하려는 품목에 대한 제조·가공시설 자체가 없거나 제조·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는 위탁제조·가공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Q4.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의뢰한 제품의 공정을 타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 가능 여부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의뢰받은 제품의 100g 포장단위는 저희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하고, 200g과 300g 포장단위는 타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나요?

- ☞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제조·가공을 의뢰 받은 같은 품목 A의 100g 포장단위를 귀 업소에서 제조·가공하고, 200g, 300g 포장단위를 타 업소에 위탁하는 것은 위탁제조·가공의 범위에 해당되어 가능합니다.

### Q5. 식품첨가물제조업 시 배수시설, 환기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면적 제한 여부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 시 배수시설, 환기시설, 방충망 등을 설치 하지 않아도 되나요? 또한, 10평에도 영업등록이 가능한가요?

- ㉞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작업장의 바닥은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므로 ‘식품첨가물제조업자’도 동 규정을 준용하여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나, 등록관청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 하여도 되므로, 배수시설, 환기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등록관청인 시·군·구청 식품위생관련부서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상 영업등록이 가능한 영업 면적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업하려는 장소 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시설을 갖추 수 있다면 영업등록이 가능합니다.

### Q6.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세척제제조업 작업장 공동 사용 가능 여부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세척제제조업을 함께 영위할 경우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 ㉞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3.에 따라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작업장(포장실 포함)은 세척제제조업의 작업장(포장실 포함)과 분리되어야 하며,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Q7.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작업장 공동 사용 가능 여부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추가로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으로 첨가물을 제조시 동일한 공정을 사용할 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따라 제조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 ㉞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1.자.3)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제조 공정이 동일하다면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8.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휴게음식점 작업장 공동 사용 가능 여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휴게음식점을 함께 영위할 경우 조리장(작업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 ㉞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8.가.2)라)에 따라 같은 건물 내에서 1명의 영업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휴게음식점을 영위하려는 경우 조리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9. 식품소분업자가 냉동, 냉장식품 소분 시 작업장 온도 기준

식품소분업자가 냉장·냉동 식품을 소분할 때 작업장 온도의 기준이 있나요?

- ㉞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소분업소에서 냉장·냉동제품 소분 작업 시 법적 기준이 되는 작업 온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냉장·냉동제품을 소분 작업을 하는 동안 해동되어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위생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공정을 진행하시고, 작업장의 온도는 해당 제품의 해동 진행정도, 소분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Q10. 유통전문판매업의 반품·교환시설을 식품 보관창고와 공동 사용 가능 여부

유통전문판매업 시설기준 관련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식품 보관창고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 ㉞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식품보관창고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반품·교환품을 보관하는 장소를 식품보관창고 내에 설치(정상제품 보관장소와 명확히 구획·구분)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 Q1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영업신고 소재지 외의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 가능 여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영업신고 소재지 외의 장소도 가능한가요?

- ㉞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5.나.5).다)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영업신고 한 관할 구역과 다른 관할 구역에 창고를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Q1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냉동, 냉장 제품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 냉동, 냉장 시설이 없어도 되는지 여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냉동·냉장 제품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 냉동·냉장 시설이 없어도 되는지 여부

- ㉞ 냉장처리나 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실온보관 계란, 주스 등)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Q13. 식품접객업소 CCTV로 조리장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한 경우, 조리장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식품접객업소 구조상 손님이 주방 내부를 볼 수 없는 경우 CCTV를 설치하여 조리장 내부의 위생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시설기준에 적합하나요?

- ㉞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서는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였을 때 CCTV를 설치하여 손님이 조리장 내부를 볼 수 있게 하는 경우라면 시설기준에 적합합니다.

**Q14.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의 공동조리장에서 조리된 식품을 각 영업장 사용 가능 여부**

일반음식점과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장이 협소한 관계로 밀가루 반죽은 제과점에서 만들어 일반음식점으로 운반해서 오븐에 구워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동 영업행위가 가능한가요?

- ㉞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8.가.2)라)(5)에 따라 공동 조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과점에서 만든 생지를 일반음식점으로 운반하여 일반음식점에서 굽는 등 별도 조리 후 판매가 가능하며, 관리 차원에서 관할 영업신고관청에 공동 조리장을 사용을 알린 후 영업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과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생지를 운반하는 경우, 해당 원료에 대한 표시사항 및 별도 포장의 의무는 없으며, 교차오염 등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 시 위생적으로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Q15. 키즈카페, 일반음식점 샵인샵 영업 시 시설기준**

키즈카페 공간 일부분을 파티션으로 구획 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가능한가요?

- ㉞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8.가.1).가)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장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키즈놀이터)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획 또는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음식점이 외부에 노출되었거나 키즈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교차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분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 용도(키즈놀이터)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 또는 구분한 일반음식점 영업장을 영업장 면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16. 일반음식점 내 노래반주기 설치 가능 여부**

일반음식점인데 노래반주기를 설치를 하고 장사를 해도 되나요?

- ㉞ 식품접객업자의 시설기준, 준수사항을 준수하면서 공연자가 공연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래반주기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손님이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Q17. 일반음식점, 횡집에서 옥외에 가마솥, 수족관 설치 가능 여부

곰탕집이 외부에 설치한 솥단지, 횡집이 외부에 설치한 수족관은 적법한가요?

- ㉞ 「도로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장 외부에 수족관, 솥 등을 설치하는 경우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영업신고를 하였다면 「식품위생법」 상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수족관, 솥 등을 영업장 면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식품위생법」 상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시설기준 및 타 법 적합 여부 등의 확인하여, 옥외의 수족관, 찜솥 등을 영업신고 면적에 포함하여 영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8년 식품안전관리지침' p.22에 따라 수족관 등은 원칙적으로 영업장(옥내)에 두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식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 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옥외에 둘 수 있으며, 옥외에 수족관 등을 둘 경우 해당 장소는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신고·관리하여야 합니다.

### Q18.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영업신고 면적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

문구점에 슬러시 기계를 놓고 생수와 일회용 컵만 사용하여 슬러시를 판매할 때, 조리시설 및 싱크대 같은 세척시설을 반드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면적 내에 두어야 하나요?

- ㉞ 영업상 사용하는 조리시설 및 조리기구를 세척하는 세척실을 영업신고 시에 영업장 면적에 포함시키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Q19. 일반음식점과 일반음식점 간 분리 여부**

일반음식점 내에 00호떡(호떡, 떡볶이 판매)으로 별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고자 할때 일반음식점과 일반음식점 간 반드시 분리를 하여야 하나요?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8.가.1).가)에 따라 일반음식점 내에 별도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또는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중 선택하여 영업신고할 수 있습니다.

**Q20. 애견용품매장과 카페 운영 시 손님이 커피를 가지고 애견용품매장 방문이 가능한지 여부**

애견용품 전문 매장을 운영 중인데 부스를 마련하여 테이크아웃 카페 형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약 3평 정도의 공간을 완전히 벽으로 차단해 해당 공간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테이크아웃 커피 등을 판매할텐데요, 이렇게 운영하기 위하여 고객들의 행동에 대한 별도 제한이 있나요?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8.가.1).가).(5)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와 애견 취급 시설이 완전히 분리되었고, 식품접객업소에서 구입한 커피를 애견 취급 시설 내에서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취식하는 것을 식품위생법 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식품접객업자 및 그 종업원이 애견 취급 시설로 음료 등을 직접 서빙을 하거나, 애견 취급 시설 내에서 취식을 권장토록 하는 등의 경우는 식품안전관리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 <개정 2017. 12. 29.>

###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

####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5)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6) 작업장은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2)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3)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 1) 수도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3)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마. 화장실

-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바. 창고 등의 시설

- 1)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검사실

-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 나)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 검사실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 다)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식품 관련 연구·검사기관에서 자사 제품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식품관련 연구·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가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의 검사실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 2)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

아.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선박에서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만 설비할 수 있다.
  - 가) 작업장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창고 등의 시설 등

냉동·냉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두어야 한다.

- 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 3)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업소 및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 등록을 한 업소의 시설 및 작업장도 또한 같다.
-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5) 식품제조·가공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의약품제조업자 또는 의약외품제조업자는 제조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중 내복용 제제가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곤충농가가 곤충을 주된 원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가. 건물의 위치 등

-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 장소(식당가·식품매장 등을 말한다) 또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품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가. 건물의 위치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나. 작업장

- 1)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판매한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떨어져 판매하는 것만 하고, 식품의 제조·가공은 하지 아니하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제조·가공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2)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다.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취급시설 등에 관하여는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다. 식품취급시설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라.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라. 급수시설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마.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바. 화장실

- 1)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3) 2)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4)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수·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아. 삭제 <2017. 12. 29.>

자. 삭제 <2017. 12. 29.>

### 3.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작업장에 대하여는 신고관청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

#### 가. 운반시설

- 1)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積載庫)가 설치된 운반 차량 또는 선박이 있어야 한다. 다만, 어패류에 식용얼음을 넣어 운반하는 경우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냉동 또는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운반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적재고는 혈액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나. 세차시설

세차장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전용세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영업자가 공동으로 세차장을 설치하거나 타인의 세차장을 사용계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차고

식품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한다. 다만, 타인의 차고를 사용계약한 경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자가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5.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 가. 공통시설기준

- 1) 작업장 또는 판매장(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유통전문판매업을 제외한다)
  -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나) 식품소분업의 소분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2) 급수시설(식품소분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3) 화장실(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제외한다)
  - 가)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다) 나)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라)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업종별 시설기준

1) 식품소분업

- 가) 식품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소분·포장하려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식용얼음판매업

- 가) 판매장은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와 취급실이 구획되어야 한다.
- 나) 취급실의 바닥은 타일·콘크리트 또는 두꺼운 목판자 등으로 설비하여야 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다) 판매장의 주변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 라) 배수로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마)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 바)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용기가 있어야 한다.

3)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가)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나)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음용온도는 68℃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 내부에는 살균등(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자판기 안의 물탱크는 내부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삭제 <2011.8.19>

4) 유통전문판매업

-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다)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 5)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나) 작업장

- (1) 식품을 선별·분류하는 작업은 항상 찬 곳(0~18℃)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작업장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거나 선별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3)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 (4) 작업장에는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5)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칼, 도마 등 조리기구는 육류용과 채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다) 창고 등 보관시설

-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 창고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서 냉장처리나 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식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3) 서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보관·운반하는 경우 구분하여 보관·운반하여야 한다.

## 라) 운반차량

-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신고 또는 등록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6) 삭제 <2016.2.4.>

7) 기타식품판매업

가) 냉동시설 또는 냉장고·진열대 및 판매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냉동 보관 및 유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삭제 <2012.1.17.>

## 6. 식품보존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조사처리업

원자력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식품냉동·냉장업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밀봉 포장된 식품과 밀봉 포장된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을 같은 작업장에 구분하여 보관하는 경우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작업장의 경우

2) 작업장에는 적하실(積下室)·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냉동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냉동예비실과 냉동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 작업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5) 작업장에는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배출 시키기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6) 작업장에는 쥐·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7) 상호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서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8) 작업장 안에서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씻기 쉬우며,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9)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0)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시설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바. 화장실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7. 용기·포장류 제조업의 시설기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신고관청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가. 공통시설기준

#####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에서 「음약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음약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및 관할 세무서장의 의제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되어야 한다.

- (1)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휴게음식점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과점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음약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는 경우
-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콜라텍업을 하려는 경우

-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또는 무도장업을 하려는 경우
- (5)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라)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조리장
  -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8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 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3) 삭제 <2017. 12. 29.>
    -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 등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3) 급수시설

-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4) 화장실

- 가)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라) 다)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마)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 가)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 (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 (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 (9)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 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마)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 나. 업종별시설기준

##### 1)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가) 일반음식점에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차·자동차·선박 또는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遊船場)·도선장(渡船場) 또는 수상레저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 (2)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 (3) 음식물의 재료(원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마)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삭제 <2012.12.17>

## 2) 단란주점영업

가)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주된 객장 안에서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3) 유흥주점영업

가)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9.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기준

###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운반시설

-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마) 나)부터 라)까지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집단급식소의 창고 등 보관시설 및 식재료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창고 등 보관시설과 식재료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탁급식업자가 식품을 직접 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반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37조(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식품)

**Q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반찬 완제품을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덜어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완제품 반찬을 구매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나누어 판매할 수 있나요?

- ㉞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완제품을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통·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 식초, 전분을 덜어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Q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미리 덜어서 포장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덜어서 판매할 때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제품을 미리 덜어 포장 후 판매할 수있 나요?

- ㉞ 일반가공식품(표시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경우 별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도 가능하며,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중량을 미리 포장하여 진열·판매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 Q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설령탕, 갈비탕 등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반찬류 중 축산물에 해당하는 설령탕, 갈비탕, 육개장 등을 생산할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추가로 신고 해야 하나요 ?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허가를 별도로 득하지 않아도 ‘설령탕’, ‘갈비탕’, ‘육개장’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 Q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소시지를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소시지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축산물 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소시지를 단순히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행위도 가능한가요?

- ☞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소시지를 별도 제조·가공 과정없이 단순히 덜어 판매할 수 없으며, 식육가공품을 나누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5.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아이스크림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구슬아이스크림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판매할 수 있나요?

- ㉞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구슬아이스크림 등 냉동식품을 단순히 덜어서 판매할 수 없으나, 냉동식품에 시럽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로 제조·가공한 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Q6.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깨, 참기름 등 다른 원재료를 첨가하여 판매 가능한지 여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냉동 꽃게와 냉동 간장소스를 해동해서 혼합 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㉞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냉동 꽃게와 냉동 간장소스를 해동하여 혼합 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7.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병에 든 주스를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병조림주스를 유리병에 옮겨 담아 판매할 수 있나요?

- ㉞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병조림 주스를 덜어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 Q8.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테이크아웃으로 따뜻한 음료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로 수제청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나요? 또한,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음료를 테이크 아웃 형태로 판매할 수 있나요?

- ☞ 수제청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뜨거운 음료와 차가운 음료를 영업소를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take-out 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 관련 법령

**제37조(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영 제21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0.3.19., 2013.3.23.>

[별표 15] <개정 2016.2.4.>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제37조 관련)

1.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립 식품 제외)
2.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떨어져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한다.

가. 통·병조립 제품

나. 레토르트식품

다. 냉동식품

라. 어육제품

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바. 식초

사. 전분

## 5

## 제38조(식품소분업 신고대상)

## Q1. 꿀 소분·판매 가능 여부

수입한 꿀을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하여 유통·판매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 귀하께서 수입한 꿀을 소분하여 유통·판매하려는 경우 및 수입 꿀의 생성된 결정을 녹이기 위해 동일한 꿀을 한 곳에 모아 중탕 가열\*한 후 소분하여 유통·판매하려는 경우 모두 ‘식품소분업’의 영업행위에 해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 질의하신 제품이 벌꿀에서 생성된 결정을 녹이기 위해 중탕 가열한 제품으로 벌꿀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면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 21. 21-1 4) (2) “벌꿀”에 해당되며 ‘자연산물’임.

## Q2. 식용유지 소분·판매 가능 여부

참기름 등 식용유지를 소분하여 유통·판매할 수 있나요?

- ☞ 식용유지를 소분하여 유통·판매 가능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Q3. 특수의료용도식품 소분·판매 가능 여부

요구르트 크기의 작은 병에 든 특수의료용도식품(환자용 식품)을 벌크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5개 정도로 소분할 수 있는지요?

- ☞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소분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① 영 제21조제5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영 제2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별꼴[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小分)·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통·병조립 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는 소분·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4.10.13.>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소분·포장만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제조업소 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 신고를 할 수 있다.

## 6

## 제39조(기타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 Q1. 기타식품판매업소 영업장 면적 산정 시 타 업종면적 포함 여부

저희는 대형마트입니다. 영업신고 시 마트 내 입점한 식품소분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영업시설을 산정하여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 하여야 하나요?

- Ⓢ 기타식품판매업 외에 식품소분업, 축산물판매업, 식육판매업 등 별도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장소는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Q2. 기타식품판매업소 영업장 면적 산정 시 '사무실' 포함여부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시 사무실도 영업장 면적 내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 Ⓢ 사무실이 식품판매 영업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라면 면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Q3. 기타식품판매업소 영업장 면적 산정 시 '기계실' 포함 여부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시 매장 외부에 있는 기계실(냉장시설이 들어가 있는 기계) 또한 영업신고 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나요?

- Ⓢ 일반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실질적인 장소는 영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 따라,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이 있는 기계실은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에 필요한 곳으로, 영업장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39조(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이란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의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 7

## 제42조(영업신고)

## Q1. 위탁급식영업신고 시 제출서류

위탁급식영업신고 시 집단급식소 설치사본과 계약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 ☞ 「식품위생법」상 위탁급식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사무소, 운반시설, 식재료 처리시설 등)을 완비한 후 위생교육 이수, 건강진단 등을 갖춘 경우 영업신고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소 설치사본 및 계약서 사본 등을 법정 의무 제출서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탁급식영업 신고 당시에 집단급식소와의 계약 체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는 해당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므로 영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1.8.19., 2012.1.17., 2012.5.31., 2014.8.18., 2014.10.13., 2015.8.18., 2015.12.31., 2017.12.29.>

1.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한다)
3. 시설사용계약서(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한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삭제 <2012.5.31.>
6.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같은 법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삭제 <2016.6.30.>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 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영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31., 2014.8.18., 2015.5.27., 2016.6.30.>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영업을 하려는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7., 2012.5.3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자가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해당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하려는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⑤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증 및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제출된 영업신고증의 뒷면에 제출일 및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어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고관청은 통보받은 내용을 영업신고 관리대장에 작성·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⑥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경우 같은 사람이 같은 시설 안에서 영 제21조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 중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2016.7.12.>

⑦ 제1항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신고할 때 같은 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를 2대 이상 설치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7., 2012.5.31., 2016.7.12., 2016.8.4.>

⑧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영 제21조제2호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고, 영 제21조제4호·제5호·제6호나목 및 제8호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2015.8.18., 2016.7.12.>

⑨ 제8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한 신고관청은 영 제21조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나목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영 제21조제8호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2015.8.18., 2016.7.12.>

⑩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1.8.19., 2012.5.31., 2016.7.12.>

⑪ 영업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2012.6.29., 2016.7.12.>

1. 삭제 <2011.4.7.>

2. 삭제 <2011.4.7.>



8

**제44조(폐업신고)**

**Q1. 공동명의일 경우, 한명이 폐업신고 진행 가능 여부**

A와 B가 영업신고 한 공동 명의자일 경우 B가 변경이나 폐업 신고에 대해 협조가 없을 경우 A가 폐업할 수 있는 방법은?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할 경우 판결문(결정문)에 의해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변경 또는 폐업신고 처리 할 수 있나요?

- Ⓢ 공동 명의로 영업 신고를 한 경우라면 두 대표자의 동의가 있어야 폐업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경우 「식품위생법」 상 사법부의 판결문 등으로 행정관청에서 폐업 처리를 직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변경 또는 폐업신고를 하라는 판결문의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변경 또는 폐업신고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2. 폐업신고 시 영업신고증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별도 제출 여부**

일반음식점을 폐업신고 하는데 영업신고증을 분실하였습니다. 폐업신고서에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적는 란이 있어 '관리소홀로 분실함'으로 기재하였는데, 분실사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나요?

- Ⓢ 귀하께서 폐업신고서 상 '분실사유란'에 분실사유를 작성한 경우 별도로 '영업신고증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관련 법령

**제44조(폐업신고)** ① 법 제37조제3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영업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12.13.]

9

제45조(품목제조의 보고등)

Q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품목제조보고 의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도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한 품목제조보고의 의무가 있나요?

- ㉞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별도 품목제조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영업신고 시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를 영업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Q2. 품목제조보고 시 제품명 영어만 사용 가능 여부

품목제조보고서 상 제품명 기재 시 영어명만으로 기재가 가능한가요?

- ㉞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II.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나.에 따라 표시는 한글로 하여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되는 식품등과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 및 주류의 제품명은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표시활자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제조보고 시 국내 제조 식품의 제품명은 한글과 영어를 혼용하거나 병기할 수 있으나, 영문으로만 표시할 수 없습니다.

### Q3. 반제품 품목제조보고 대상 여부

당사는 감자크로켓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주 원료중 감자의 장기보관이 어려워 정선-가열-냉동하여 필요 시 완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반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유통·판매 목적이 아닌 공정 중의 반제품 또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나요?

- ㉞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품목이 아닌 제조·가공 공정 중의 반제품은 품목 제조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제품을 사용한 최종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 및 제조방법설명서 등에 반제품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반제품의 보관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나, 보관 시 반제품명, 제조일자 등을 적어 완제품과 오인·혼동이 없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반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소진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 Q4. 품목제조보고 시 배합비율 산정 기준

품목제조보고 시 원재료의 배합비율의 합이 반드시 100%가 되어야 하나요?

- ㉞ 「식품위생법」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는 실제 투입된 원재료를 기준으로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합은 100%여야 할 것이나,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 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되므로,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및 성분의 배합비율만을 기재할 경우 총 비율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시) 10가지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배합비율을 표시하는 경우, 이중 2가지 원료만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2가지 원료의 배합비율만 표시하면 되므로, 나머지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8개 원료는 원료명만 표시하면 되므로 총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Q5. 배합비율 기재 조건 중 '사용기준'이란

품목제조보고서의 유의사항에는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㉞ 식품공전의 '사용기준'이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별 유형에서 사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첨가물 등 원재료 또는 성분을 의미하며, 식품첨가물공전의 사용기준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지정된 식품첨가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대상 식품, 사용량 및 사용목적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Q6. 튀김 시 사용하는 기름, 면을 삶을 때 첨가되는 소금 등 원료 기재 대상 여부

식품 제조 공정 중에 투입되는 원료(즉 튀김을 할 때 사용하는 기름이나, 면을 삶기 위해 끓는 물에 소금을 투입하는 경우)는 모두 기재하여야 하나요?

- ㉞ 튀김을 할 때 사용하는 기름이나, 면류를 삶기 위해 끓는 물에 투입하는 소금 등은 품목제조보고 시 원재료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 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의무기재사항에 해당되므로, 귀하께서 제조하는 최종 제품의 기준 및 규격 상 기름 및 소금 등의 사용기준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배합비율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Q7. 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 품목제조보고서 상 기재 여부**

저희는 땅콩가공품을 제조하는데, 정제수를 2%넣어 당액을 제조하고, 공정 중 수분을 날려 최종 제품에는 수분이 다 증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 경우에도 정제수를 원재료명 및 배합비율란에 기재하여야 하나요?

- ☞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 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의무기재사항에 해당되므로, 귀하께서 제조하는 제품(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의 경우 정제수는 원재료명에 기재하되 배합비율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Q8. 복합원재료의 세부항목 입력 여부**

품목제조보고서 복합원재료의 세부항목을 다 입력해야 하나요?

- ☞ 원재료 중 복합 원재료의 세부 원료의 경우 보고의 의무가 없으므로, 원재료 중 복합 원재료는 기재하되 그 복합 원재료의 세부 원료 및 배합비율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Q9. 원재료의 원산지 품목제조보고서 상 기재 여부**

식품 품목제조보고서에 원산지를 표기 하여야 하나요?

- ☞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는 품목제조보고 의무 기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Q10. 원재료의 품종이 다를 경우 별도 품목제조보고 대상 여부

땅콩의 품종이 다를 경우 품종별로 품목제조보고를 해야하나요?

- ㉞ 땅콩의 품종이 다르지만, 원재료는 땅콩으로 동일하고 제품명을 하나로 하고자 하는 경우 품종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맛, 향 등에 따라 품종을 달리하고, 제품명을 달리 표시하여 판매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를 달리 하실 수 있습니다.

### Q11. 전량 수출용 제품 품목제조보고 대상 여부

전량 수출용으로 제조되는 혼합제제의 경우도 품목제조보고 대상인가요?

- ㉞ 전량 수출용 식품첨가물이라 하더라도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전량 수출용 제품'으로 등록관청(시·군·구)에 품목제조보고 하여야 합니다.

### Q12. 기 품목제조보고 된 내수용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별도 품목제조보고 대상 여부

기 품목제조보고한 국내 유통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별도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나요?

- ㉞ 식품제조·가공업자가 기 품목제조보고 한 내수용 제품과 원재료, 배합비율 등이 모두 동일한 제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용에 대하여 별도로 품목제조보고 하지 않고 기존 내수용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로 함께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내수용 제품과 제품명, 원재료, 배합비율 등이 달라지는 경우 '수출용 제품'으로 별도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Q13. 원재료, 배합비율 등이 모두 동일한 제품을 다른 제품명으로 품목제조 보고 가능여부

기 품목제조보고한 제품과 원재료, 제조방법이 동일한 제품을 다른 제품명으로 품목 제조보고할 수 있나요?

- ☞ 품목제조보고 시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 유통기한 등이 동일한 제품의 경우 각각 제품명을 다르게 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의뢰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명 및 함량, 제조방법(공정), 성상 등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가 가능합니다.

### Q14. 기 품목제조보고 된 제품과 원재료는 동일하나 제조방법이 상이한 경우 다른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 여부

기 품목제조보고한 제품과 원재료가 동일하나 제조방법이 다른 경우 다른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가 가능하나요?

- ☞ 기 품목제조보고한 제품과 원재료, 배합비율 등은 동일하나 제조방법이 상이한 경우라면, 제품명을 달리하여 별도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Q15. 기 품목제조보고 된 제품과 용량만 다르게 하여 다른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 여부**

기 품목제조보고한 제품을 용량만을 다르게 하여 다른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할 수 있나요?

- ㉞ 기 품목제조보고 한 제품과 원재료, 배합비율, 유통기한 등이 모두 동일하며 중량(용량)만이 상이한 경우는 하나의 품목제조보고에 일괄 기재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며, 별도의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16. 기 품목제조보고 된 제품의 배합비율의 일부를 조정하여 다른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 여부**

기 품목제조보고한 제품을 원재료의 배합비율을 일부 조정한다면, 기존제품과 유사하더라도 신규로 품목제조보고가 가능하나요?

- ㉞ 기 품목제조보고한 제품과 배합비율이 상이한 제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는 별도의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Q17. 유통전문판매업자가 기 품목제조보고 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제조 의뢰한 경우 다른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 여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A라는 제품명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도중에, 유통전문 판매업소의 의뢰로 A라는 상품과 원재료명 및 함량, 제조공정, 성상이 동일한 제품을 제품명만 B로 새로 품목제조보고를 할 수 있나요?

- ㉞ 「식품위생법」 상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의뢰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기존 생산 제품 중 같은 원재료, 배합비율, 제조공정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가 가능합니다.

### Q18. 여러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동일한 제품의 제조를 의뢰한 경우 각각 다른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 여부

여러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동일한 제품(동일한 원료, 동일한 배합비율, 동일한 공정도)에 대하여 각각 다른 제품명으로 생산을 의뢰한 경우, 동일한 제품을 각각 다른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가 가능한가요?

- ☞ 여러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의뢰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같은 배합비율을 사용한 동일한 제품일 경우에도 다른 제품명으로 각각 품목제조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의뢰 받은 제품의 품목제보고서에 유통전문판매업소명을 기재하여 관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Q19. 포장재질, 유통기한만이 상이한 두 제품을 별도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 여부

원재료, 배합비율, 보관방법 등이 모두 동일하나 포장재질 및 유통기한만이 상이할 경우 별도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가 가능한가요?

- ☞ 포장재질 및 유통기한이 상이한 제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라면 제품명을 달리하여 각각 품목제조보고 할 수 있습니다.

### Q20. 표시 완제품을 세트로 구성한 경우 품목제조보고 대상 여부

각각의 품목제조보고가 완료된 표시 완제품을 세트로 묶어서 판매할 경우 추가적으로 품목제조보고서를 해야하나요?

- ☞ 각각 품목제조보고가 되어 있는 제품을 표시 및 포장이 완료된 식품을 세트로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는 별도 품목제조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Q21. 자사 제품과 타사 제품을 세트로 구성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하려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대상 여부

즉석밥은 당사에서 제조하고 소스와 건조야채는 타 제조업체에서 납품받아 당사에서 생산한 즉석밥과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하고자 합니다. 동 경우 품목제조보고를 세 제품을 묶어서 할 수 있나요?

- ㉞ 자사 제조한 즉석밥과 타사 제조한 소스와 건조야채를 하나의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 하고자 하는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구성품 중 하나의 유형을 대표로 '식품의 유형'란에 기재하되, 실제 구성한 모든 제품의 유형을 '기타'란 등에 기재하여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로, 합포장된 최종제품의 유형은 '즉석조리식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포장된 제품은 이미 품목제조보고된 각각의 식품유형이 적용됩니다.

### Q22. 위탁제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 주체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따라 타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식품의 일부 제조·가공공정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도 위탁받은 제품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나요?

- ㉞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따른 위탁 제조 시, 품목제조보고의 의무는 위탁자인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있습니다.

### Q23.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품 생산을 위탁한 경우 품목제조보고 주체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식품의 제조·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 ㉞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는 품목제조보고의 의무가 없으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원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Q24. 품목제조보고 중단보고 할 시 기 생산된 제품 판매 가능 여부**

품목제조 중단보고를 할 경우 이미 만들어 놓은 제품은 판매할 수 있나요?

- ㉞ 「식품위생법」 상 '품목제조보고 중단(취하 또는 반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생산하지 않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생산한 제품이라면 유통기한 내에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Q25. 품목제조보고 중단보고 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 가능 여부**

품목제조 중단 보고한 제품을 원료성 제품으로 사용 할 수 있나요?

- ㉞ 「식품위생법」 상 '품목제조보고 중단(취하 또는 반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생산하지 않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생산이 완료된 제품은 유통기한 내에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6. 식품과 축산물을 하나의 제품으로 구성 시 품목제조보고**

자사에서 제조하는 탕수육(개별 포장 되지 않음)과 소스(개별 포장 됨)를 한 포장지에 담아 하나의 제품으로 유통하고자 할 시, 품목제조보고를 어떻게 하나요?

- ㉞ 각각 품목제조보고 된 개별 포장되지 않은 축산물(탕수육)과 개별 포장된 소스(식품)를 구성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구성품 중 주요 유형의 소관 법령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하되, 실제 구성한 모든 제품의 유형에 대한 정보를 '기타, '제조방법설명서' 등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제4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을 위탁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2.1.17., 2013.3.23., 2014.5.9., 2014.8.20., 2015.12.31., 2016.2.4.>

1. 제조방법설명서
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제5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대상이 되는 식품등만 해당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법 제10조제1항의 표시기준에 따른 유통기한 표시 대상 식품 외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려는 식품을 포함한다)
4. 할랄인증 식품(제8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됨을 인증받은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인증서 사본(할랄인증 식품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44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 10

## 제4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 Q1.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 시점

기존 포장지 소진 시점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원재료 등을 변경하기 2~3개월 또는 1~2주 전 미리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를 할 수 있나요?

- ㉞ 「식품위생법」 상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를 한 시점(관할관청에 제출한 시점) 부터 ① 품목제조보고한 내용에 적합한 제조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② 원재료, 배합비율 등도 변경보고한 내용에 맞게 사용하고 제품에 표시하여야 하므로, 생산자가 2~3개월 또는 1~2주 전 미리 변경보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변경 보고한 대로 생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임.

## Q2. 식품첨가물을 변경할 경우 중단보고 대상 여부

기 품목제조보고서 상 기재한 원재료인 식품첨가물이 다른 식품첨가물로 변경될 경우 중단보고 대상인가요?

- ㉞ 「식품위생법」 상 품목제조보고 중단에 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으며, 제품에 사용된 식품첨가물이 변경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하여야 합니다.

## Q3. 원재료 변경할 경우 변경보고 대상 여부

원재료가 고추에서 피망으로 변경될 경우 반드시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나요?

- ㉞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고추에서 피망으로 변경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하여야 합니다.

#### Q4. 원재료의 제품명이 변경될 경우 변경보고 대상 여부

활성글루텐(vital wheat gluten)을 원재료로 사용 중인 업체에서 활성밀글루텐(vital wheat gluten, 영문명은 같음)을 사용할 경우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나요?

- ㉞ 최초 품목제조보고 시에 원재료로 활성 글루텐(밀 100%)으로 보고하였고, 변경된 원재료가 제품명(활성 밀글루텐)만이 상이할 뿐 밀100%로 같은 경우라면 별도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5. 원재료의 원산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보고 대상 여부

튀김식품의 주 원료가 명태일 경우 A나라에서 납품받아 사용하나, 판매업체가 동일한 원재료, 함량으로 B나라에서 수입한 명태로 생산해달라고 요청한 경우, 원산지 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거나 원재료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나요?

- ㉞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는 품목제조보고서 상 기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품명, 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 유통기한 등이 동일한 제품의 경우 원산지별로 별도 구분하여 품목제조보고 하거나, 변경신고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품목제조보고서 상 기타란 등에 판매업체에 따라 원산지가 다른 원재료를 사용하는 사항을 기재·관리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Q6.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만 변경할 경우 변경보고 대상 여부

기 품목제조보고 사항 중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가 변경될 경우 품목제조보고 변경 보고를 하여야 하나요?

- ㉞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대상은 아니나, 관할 등록관청에 해당 내용을 알린 후 생산·유통하고, 등록관청에서는 보고받은 변경사항 등을 관리대장 등에 기재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7. 제조방법 중 일부를 변경할 경우 변경보고 대상 여부**

도라지즙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라지의 쓴 맛을 줄이고자 기존의 제조공정에서 증숙공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경우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나요?

- ㉞ 일부 제조방법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변경 보고 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생산 제품의 효율적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변경 내용에 대한 정보사항을 관할 등록관청에 보고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Q8.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른 유형변경시 변경보고 대상 여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으로 인하여 식품유형이 변경된 경우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나요?

- ㉞ 고시 개정으로 단순히 식품 유형이 통합되거나 변경된 사유로 ‘식품의 유형’이 변경된 경우라면 품목제조보고 변경대상은 아니나, 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에 변경되는 식품 유형에 대해 알린 후 해당관청(시·군·구)에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품목제조보고서를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Q9. 유통기한을 단축할 경우 변경보고 대상 여부**

유통기한을 단축하는 경우는 변경보고를 할 수 없나요?

- ㉞ 품목제조보고 시 보고한 유통기한 보다 짧게 하여 판매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사항 변경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변경보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변경보고서를 제출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 Q10. 영업승계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보고 대상 여부

영업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법인명으로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나요?

- ☞ 귀하께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영업승계를 한 경우라면, 기 품목제조보고 한 사항은 별도 변경보고 없이 그대로 관리 가능합니다.

### Q11.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보고 대상 여부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상 위탁생산내역을 변경보고 하여야 하나요?

- ☞ 귀 사에 제품의 생산을 의뢰한 유통전문판매업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는 품목제조변경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 법령

**제4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① 제45조에 따라 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할랄인증 식품 인증서 사본(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식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19., 2012.6.29., 2014.5.9., 2015.12.31.>

1. 제품명
  2.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제45조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서 등록관청에 제출한 원재료성분 및 배합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유통기한(제45조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할랄인증 식품 해당 여부
- ② 삭제 <2012.6.29.>

## 11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 Q1. 식품 생산과 관련없는 사무실 직원의 건강진단 대상자 여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사무실 직원 중 현장출입을 하지 않는 부서원은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 ㉞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하는 일에 종사하지 않는 사무실 직원인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2. 단기 아르바이트 작업자의 건강진단 대상자 여부

식품과 직접 접촉 혹은 내포장 등의 작업이 아닌 외포장의 작업장에 단기 아르바이트 작업자를 배치할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 작업자는 건강진단 대상자인가요?

- ㉞ 귀하의 업소에서 작업자가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직접 종사하지 않고 외포장의 작업만 하는 경우라면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Q3.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대표자의 건강진단 대상자 여부

식품제조·가공업소입니다. 당사 대표님의 경우 회사에 상주 하고 계시지 않으시며, 주 1~3회 정도 회사에 방문하십니다. 동 경우 대표님이 건강진단 대상자인가요?

- ㉞ 대표자가 식품을 취급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다면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4. 음료기계 설치·수리기사의 건강진단 대상자 여부**

당사는 음료기계를 판매하는 회사로, 음료기계 설치·수리기사는 음료기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의 테스트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음료를 뽑아서 음료의 양과 브릭스 측정을 하는 등의 업무를 합니다. 동 경우 설치·수리기사도 건강진단 대상자인가요?

- ㉞ 식품 관련 장비의 설치/철수, 수리 및 시운전 하는 작업자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5. 사회봉사자의 건강진단대상자 여부**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봉사명령을 받고 집단급식소에 차출되는 사회봉사자가 급식소에서 조리행위를 제외한 배식, 설거지 업무에 투입되는 봉사자의 건강진단 대상자인가요?

- ㉞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봉사명령을 받고 집단급식소에 차출되는 사회봉사자가 일시적으로 급식소에서 조리행위를 제외한 배식, 설거지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로 볼 수 없으나, 사회봉사자가 집단급식소에서 지속적으로 배식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식품으로 전이 될 수 있는 전염성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건강진단 규정의 입법취지를 비추어 볼 때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Q6. 식자재 배송 기사의 건강진단 대상자 여부

냉동, 냉장식품을 포함하여 야채, 과일 등의 식품을 배송하는 배송기사님들도 건강진단 대상자인가요?

- ㉞ 식자재 배송 기사분이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 및 종업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영업자 및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완전 포장된 식품 등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 12 제57조(영업자 준수사항)

### Q1.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생산 및 작업기록의 범위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2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생산 및 작업기록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 ④ 「식품위생법」 상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는 영업자가 제품의 특징 및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품의 생산일자, 생산량, 원부자재의 사용과정, 제품생산과 관련 작업기록(생산설비의 세척 및 청소 등과 관련한 사항 등), 작업자 관리 현황 등 생산제품의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작성·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Q2.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수탁업소를 점검할 시 외부기관에 위탁 가능 여부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가 반기별 1회 수탁업소를 위생점검함에 있어, 인력 한계성, 효율성 및 전문적 관리 차원에서 위생점검 전문기관(SGS 등)에 위생점검업무를 위탁할 수 있나요?

- ④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수탁사인 제조업체를 ‘직접’ 점검하여 책임·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전문인력 등이 부족하여 주기적·효율적인 점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책임 하에 식품위생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단체, 협회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Q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쿠키를 미용실에서 진열·판매 가능 여부

즉석식품제조·가공업자로, 쿠키 생산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혹은 카페나 미용실 등에 진열·판매가 가능한가요?

- ㉞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인 쿠키는 영업소 내에서 또는 배달을 통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가 아닌 면세점, 카페, 미용실 등에서 진열·판매하는 경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 Q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배달 가능 지역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배달시 영업신고 관할 지역 내에서만 배달이 가능한가요?

- ㉞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면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배달할 수 있는 거리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할 지역 상관없이 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적법한 표시를 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보존 및 유통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Q5.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배달 위탁 가능 여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다른 물류 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 택배로 배달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 ㉞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지정된 물류업체에게 '배송'행위를 위탁하여 제품을 배달·판매할 수 있습니다.

### Q6.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쿠키를 식품접객업소(체인점)에 납품하여 진열·판매 가능 여부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로, 소규모 쿠키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로 직접 제조·가공한 쿠키를 납품하여 전국 카페 체인점에서 진열·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인 쿠키를 프랜차이즈 본사로 보내고 다시 전국 체인점으로 보내 진열·판매하는 경우는, 납품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조·가공한 식품을 전국적으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이 필요함을 알려 드립니다.

### Q7.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제품을 식품접객업소에서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제공 가능 여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수육을 일반음식점에서 구입하여 소비자가 취식할 수 있도록 반찬 등으로 제공할 수 있나요?

- Ⓢ 일반음식점에서 조리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소비자가 취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완료된 제품이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Q8.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제품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원료로 사용 가능 여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하는 식품의 원재료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고춧가루를 사용할 수 있나요?

- ㉞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하는 식품의 원재료인 고춧가루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것을 배달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식품을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일부 부수적으로 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원료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배달받는 제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적법한 표시를 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보존 및 유통기준 등을 준수한 제품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Q9.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오픈마켓 등으로 주문을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 여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오픈마켓(옥션, 지마켓, 네이버쇼핑 등)과 개인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 ㉞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 등 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라면, 온라인 판매 장소(직접 운영하는 사이트, 오픈마켓, 소셜 등)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상 제한하는 바가 없으며, 결제시스템, 수수료와 관계없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주문받은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택배 등의 방법으로 직접 배달하는 경우라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판매 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적법한 표시를 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보존 및 유통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Q10.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블로그를 통해 소비자에게 주문받아 배달 가능 여부

저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하기도 하지만 블로그를 통해 주문을 받고 행사장에 도착한 주문자인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방식의 영업도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영업행위가 가능한가요?

- ㉞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블로그를 통해 주문 받아, 주문받은 제품을 행사장으로 직접 배달하여 주문한 최종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형태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판매 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적법한 표시를 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보존 및 유통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Q1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냉동액란을 해동하여 집단급식소에 납품 가능 여부

저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로, 집단급식소에서 냉동액란을 해동하는데 공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해동하여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동 경우 해동하여 유통이 가능한가요?

- ㉞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수입 냉동 액란(알가공품)의 해동(解凍)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Q12.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업신고증 원본을 비치하지 않을 시 위반인지 여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라 영업신고증 등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영업소 안에 영업신고증 원본은 없이 사본 또는 이미지파일(핸드폰, 컴퓨터 저장)만 보관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 ㉞ 영업신고증 등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출입·검사·수거 등을 함에 있어 해당 영업자가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신고한 영업의 형태에 따라 영업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영업자가 원본을 별도로 보관 후 영업장내 사본 또는 이미지 파일로 보관하여 영업신고증 상 적시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

### Q13. 식품접객업소의 거래명세서 보관기간

식품접객업소에서 원재료의 거래명세서를 거래 후 언제까지 보관하여야 하나요?

- ㉞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7.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영업 시 거래명세서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Q14. 일반음식점 상호명으로 'OO카페', 'OO커피', 'OO바' 사용 가능 여부**

일반음식점 상호명에 'OO카페', 'OO커피', 'OO바'를 사용할 수 없나요?

- ㉞ 일반적으로 '카페', '커피' 등의 상호명의 경우 주로 다류를 취급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에, '바(bar)'의 경우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의 경우에 가능한 상호명으로 판단되나, 특정 상호를 보고 업종 인식의 혼동을 느끼는 주체는 소비자이므로 소비자가 그 상호를 보고 일반음식점이 아닌 타 업종(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 등)으로 인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일반음식점 상호명의 일부로 '커피', '카페', '바'의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당해 표현을 상호명의 일부로 사용함에 있어 타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의미의 단어와 결합하여 표현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15. 식품접객업소 상호명으로 행정명칭(면사무소, 서울특별시 등) 사용 가능 여부**

일반음식점 상호명에 '서울특별시', '면사무소', '삼성특별시(행정구역+행정명칭)' 등을 사용할 수 있나요?

- ㉞ “서울특별시, 면사무소, 삼성특별시” 등 행정명칭을 식품접객업의 상호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간판에 업종표기(일반음식점 등)를 분명히 한 상태로 소비자의 오인·혼동이 없는 경우라면 「식품위생법」상 제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상법」에서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법」을 비롯한 타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16. 식품접객업 업종명 표시

휴게음식점을 하려는 편의점에서 외부 간판 또는 내부코너에 휴게음식점의 업종을 표기하여야 하나요?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관련 [별표 17] 7.사목에 따라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라면 간판에 업종명과 상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간판’의 정의가 “기관, 상점, 영업소 따위에서 이름이나 판매 상품, 업종 따위를 써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이게 걸거나 붙이는 표지”임을 고려하여, 동 정의에 부합하도록 게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외부간판에 업종명을 분명히 표기한 경우라면 영업장 내에 별도로 업종을 표기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Q17. 유흥종사자 명부 기록관리 여부

유흥주점에서 유흥종사자 명부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나요?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7.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파목에 따라 유흥주점영업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 이직일, 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유흥접객원만 해당)명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비치·기록·관리하지 않은 유흥주점영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별표 2] 2.카목에 따라 10만원(1차 위반 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8. 식품접객업소의 가격 표시 방법**

휴게음식점 메뉴판에 가격을 기재할 공간이 없는 경우 '아메리카노 2.9', '카페라떼 3.0' 등으로 가격을 소수점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 ㉞ 휴게음식점에서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소비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단위 가격(1000원)을 기재하고 소수점으로 가격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19. 식품접객업소의 가격을 '숫자(시가)'로 표현 가능 여부**

식품접객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게(찜기에 단순히 찢 상태) 및 회 등 수산물에 대하여 가격표에 '시가'라고 표시한 부분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규정 위반인지?

- ㉞ 일정한 시가의 물건 값을 뜻하는 '시가'라고 가격표에 표시할 경우에는 당일 시세와 같이 손님이 실제로 낼 수 있는 가격을 병기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Q20. 식품접객업소의 식육 가격 표시방법**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는 석갈비의 식육 중량을 메뉴판에 기재함에 있어 조리하기 이전의 식육 중량을 표현한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인가요?

- ㉞ 질의하신 '석갈비'의 경우 조리가 완료된 상태로 손님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므로 가격표에는 '석갈비'라는 메뉴에 대한 가격만을 표시하면 될 것이나, '석갈비' 중의 식육의 가격을 표시하려는 경우라면 조리하기 이전의 식육 중량을 환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조리가 완료된 상태로 손님에게 제공되는 '석갈비'의 식육 가격 표시 시 조리하기 이전의 식육 중량에 따른 가격을 표시한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7.커목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Q21. 식품접객업소의 메뉴 중량 표시 위반 여부

호프집에서 맥주 2000cc를 주문하였으나, 1500cc 용량으로 제공하는 경우 메뉴판에 2000cc라는 표현은 허위표시가 아닌가요?

- ㉞ 가격표에는 “2,000cc”로 기재하고, 실제 제공하는 식품의 중량이 “1,500cc (또는 1.5 l)”인 경우라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II.3. 제10호.8) 별표 17 제7호커목을 위반한 경우로 보아 제공한 영업자는 시정명령 처분(1차 위반 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 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개정 2017. 12. 29.>

### **식품접객영업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 1.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 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나.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대리점을 통하여 또는 직접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진열·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식품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마.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장난감 등을 식품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장난감 등이 식품의 보관·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난감 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바.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별표 14 제1호자목2) 또는 제3호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그 제조·가공업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거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이물이 검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사진, 해당 식품 등을 말한다)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이물 또는 증거품은 2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 야.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차.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 영·유아의 이유 또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신문·잡지·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조제분유와 동일한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를 제조·가공·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 식품 및 용기·포장과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한 식품등을 부패하거나 변질되어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작성하고, 최종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파.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우수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하.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검사설비에 검사 결과의 변경 시 그 변경내용이 기록·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거. 초산(C2H4O2) 함량비율이 99% 이상인 빙초산을 제조하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빙초산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야 한다.

##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 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
  -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 나.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다.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原)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은 제외한다)·운반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영업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식품의 거래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2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나.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라.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제조업소명 및 판매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마. 식품판매업자는 제1호마목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 삭제 <2016.2.4.>
- 사. 식품운반업자는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반목적 외에 운반차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차. 식품판매영업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진열·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카. 이유식 등을 신문·잡지·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조제분유와 같은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타. 삭제 <2016.2.4.>
- 파. 식품소분·판매업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이를 수입·가공·사용·운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하. 식품소분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2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사진, 해당 식품 등을 말한다)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이물 또는 증거품은 2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 거.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제조·가공을 위탁한 제조·가공업자에 대하여 반기마다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제조·가공업자가 위탁받은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인 경우 또는 위탁받은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 가. 자판기용 제품은 적법하게 제조·가공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자판기 내부의 정수기 또는 살균장치 등이 낡거나 닳아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바꾸어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즉시 그 기능을 보강하여야 한다.
- 다. 자판기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는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하여 청결히 하여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라. 자판기 설치장소 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하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야 하며, 쥐·바퀴 등 해충이 자판기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마.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은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결과		비고
		내부청결상태	정상가동여부	

- 바. 자판기에는 영업신고번호, 자판기별 일련관리번호(제42조제7항에 따라 2대 이상을 일괄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제품의 명칭 및 고장시의 연락전화번호를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판매기 앞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 5.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 가. 영업자는 식품의 구매·운반·보관·판매 등의 과정에 대한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 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냉동식품을 공급할 때에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解凍)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라.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구, 용기 및 포장은 사용 전, 사용 후 및 정기적으로 살균·소독하여야 하며, 동물·수산물의 내장 등 세균의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 부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사용한 기구에 따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운반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 1) 일부항목 검사: 1년(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 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는 제외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사. 법 제15조에 따른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식품조사처리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조사연월일 및 시간, 조사대상식품명칭 및 무게 또는 수량, 조사선량 및 선량보증, 조사목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의 주방용구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삭제 <2011.8.19>

마. 삭제 <2011.8.19>

- 바. 제과점영업자가 별표 14 제8호가목2)라)(5)에 따라 조리장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빵류를 실제 제조한 업소명과 소재지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판, 팻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사. 간판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자.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만 해당한다)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식생활개선 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동물·식물을 사용하여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2)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 4)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 5)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6)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 7)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파. 유흥주점영업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 이직일, 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유흥접객원만 해당한다)명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하. 손님을 피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 업소 안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 1) 일부항목 검사: 1년(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 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는 제외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여 살균하여야 한다.
- 리.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머. 식품접객업자는 공통찬통, 소형찬기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버.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는 영업장 안에 설치된 무대시설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손님의 요구에 따라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한 식품을 조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어.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저. 조리·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이하 "뷔페"라 한다)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제과점영업자에게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이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일 구입하였다는 증명서(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처.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커.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아목에 따른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 터. 아목에 따른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다.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 불고기 100그램 ○○원(1인분 120그램 △△원)

갈비 100그램 ○○원(1인분 150그램 △△원)

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제과점영업자는 신고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그 음식판매자동차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히.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지 아니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는 위생등급 지정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8. 위탁급식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물수건, 손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 1)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바.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 사. 조리·제공한 식품(법 제2조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 아. 삭제 <2011.8.19>
- 자. 삭제 <2011.8.19>
- 차.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3 제89조(행정처분 기준)

### Q1.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서류정리, 청소 등 가능 여부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제조업 이외 다른 영업도 할 수 없나요? 또한 이 기간 동안 제조행위가 아닌 사무실에서 서류정리나, 청소, 세척 등의 행위는 할 수 있나요?

-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한해 영업정지 처분이 해당되며,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것을 말함에 따라 영업정지 이후 이에 해당하는 모든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사무실에서의 서류정리, 청소, 세척은 위의 규정의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Q2. 품목류 제조정지의 범위

관내 A제조사에서 생산한 B제품(크림이 도포된 빵류)의 정부 수거검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양성판정으로 부적합 통보된 건의 행정처분기준을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II.개별기준.4.아목을 적용하여 품목류제조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폐기에 해당되는 바, 처분사항인 품목류 제조정지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의 I.1.나.에 의하면 ‘품목류’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 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하므로 질의하신 사안의 품목류제조정지 처분은 문제되는 제품과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 받아 제조·가공되는 품목에 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3.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시 행정처분 기준**

식품제조·가공업소가 타 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유통기한 경과된 완제품(떡볶이떡, 라면사리)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인가? 과태료 처분 대상인가?

- ☞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자사 제품은 물론 타사 제품까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II.1.제11호.가목.2)에 따라 ‘영업정지 15일’ 처분에 해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Q4. 일반음식점 외의 장소에서 식재료 보관 시 행정처분 기준**

일반음식점에서 건물의 뒷편, 주차장 등에 임의로 대형 냉장고를 설치하여 식재료를 보관하는 등 영업행위를 한 경우 어떤 행정처분을 받나요?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건물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등과 분리·구분·구획하여 영업장을 신고하여야 하고, 영업신고 된 장소 내에서 영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음식점의 원료 보관행위도 영업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원재료를 보관하는 냉장·냉동고의 장소도 영업신고 된 장소 내에 보관하여야 하며, 영업신고 면적 외의 장소에서 원재료를 보관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II.3.제8호.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처분(2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Q5. 영업정지 7일을 영업정지와 과징금처분으로 나누어 처분 가능 여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여 ‘영업정지 7일’ 처분사전통지를 한 결과, 영업자가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영업정지 3일과 4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요청한 경우 영업정지와 과징금으로 나누어 처분이 가능한가요?

- ☞ 「식품위생법」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영업정지처분이 허가처분 등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수단으로서 영업자가 허가 등에 따른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 제재로서 가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하나, 이로 인하여 그 영업자가 수행하는 영업활동을 이용하는 일반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중대한 법령 위반을 제외하고는 영업정지에 대해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정지는 행정제재 처분에 해당되어 영업자가 일부 영업정지, 일부 과징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중에 한가지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 Q6.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종사자를 불러接客행위를 하게 한 경우 제44조 1항, 3항, 4항 중 어떤 조항 위반인지 여부

단란주점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손님 요청에 따라 '일명' 보도방 또는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불러 본인이 운영하는 업소 내에서 남자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노래와 춤을 추는 등 유흥接客행위를 시키고 시간당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였을 경우, 동 위반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어느 항의 위반으로 처분?

- ㉞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의 7. 타.1)에 의하면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接客원을 고용하여 유흥接客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흥종사자란 반드시 고용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에 의하여 취업한 여자종업원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적어도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부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2001도5837)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영업자가 영업자의 손님의 요청에 따라 보도방 등에서 여성을 불러 유흥接客행위를 시키고 시간당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일시 고용행위로 보아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유흥接客행위를 한 당사자나 이를 알선한 보도방 또는 다방의 업주 등은 「식품위생법」 제44조제3항 위반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Q7. 청소년 주류 제공에 따른 불기소처분 받아 영업정지를 감경 받은 경우, 감경 받은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음식점에 청소년주류제공(1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진행 중 검찰로부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후 행정심판위원회에 보충 자료로 제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에서 20일로 재결되었을 경우 영업정지 20일을 과징금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III.3.라.에 따라 청소년 주류제공위반의 경우 과징금 제외대상에 해당하나, 같은 기준 I.15.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불기소처분 받은 사유가 상기 기준 I.15.에 정해진 사유라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과징금 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야 할 것이며(행정심판법 제49조제1항), 이는 그 재결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당 행정청은 그 재결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Q8. 청소년 주류 제공에 따른 불기소처분 시 불기소의 종류와 관계없이 감경가능한지 여부

신분증 위·변조, 도용에 따른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불기소 종류(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여도 되는지 여부?

- 불기소 종류 :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공소보류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관련 [별표 23] I.일반기준 제15호 차목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기간의 10분의 9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 종류에 관계없이 동 규정의 경감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9. 사법기관에서 형사적 입건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영업자는 미입건, 종업원만 형사처벌받은 경우, 제44조제2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사법기관에서 영업자는 형사적 입건조건이 성립이 안 되어 미입건되고 청소년에게 직접 주류를 배달한 종업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 위반으로 행정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 ㉞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종업원은 식품접객업소에 소속된 직원으로 소속된 영업소의 일을 한 것으로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영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행정처분은 형사사건과 별개의 건으로 사법기관에서에서 형사적 입건조건이 성립이 안 되어 미입건 되었다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위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10. 행정처분 차수적용**

- `16. 3. 2 :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에 따른 1차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 `16.10.24 :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에 따른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2개월)
- `17. 7. 4 : 동일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차수적용은?

- ㉞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I.일반기준 5.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8조, 법 제19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법 제7조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기준 6.에 의하면 제5호에 따른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수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 질의회신(05-0039,13-0654)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취지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행정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행정처분보다 차수를 가중하여 처분한다는 것이지, 그 1년 이내에 동일위반행위가 적발된 횟수에 따라 차수를 적용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사안의 경우 3차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11. 행정심판 재결 결과 처분이 감경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과징금 처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과징금 처분이 불가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 재결결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I (일반기준).15호 마목의 감경기준을 적용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처분하였기 때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3] III(과징금 제외 대상) 4호에 해당되므로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갈음이 가능한지 여부?

- ☞ 질의하신 사안과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 신청 결과 위반사항 중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 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의 III. 4.에 의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행정심판법 제49조제1항의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청이 상기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경우 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Q12. 배달책자 내 한 업소가 여러 개의 상호 사용 시 위반 여부**

배달음식 홍보책자에 음식점 광고 시 1개 업소가 여러 상호를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7. 사.에 따른 ‘간판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준수사항 위반을 근거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㉞ 간판은 기관, 상점, 영업소 따위에서 이름이나 판매 상품, 업종 따위를 써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이게 하거나 붙이는 표지(출처: 표준국어대사전)를 의미하며 상호란 상인이 영업활동을 할 때에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쓰는 이름(출처: 표준국어대사전)을 의미합니다.
- 간판과 상호의 의미는 상이하므로 질의 사안의 경우 상호를 간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홍보책자에 1개 업소가 여러 상호를 사용한 것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으로서의 상호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처분하는 것도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

**Q13. 제조원, 판매원이 다를 때, 허위·과대광고 처분 대상**

제조원과 판매원이 다를 경우, 판매원 측에서 표시사항에 과대광고를 하게 되면 제조원도 함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나요?

- ㉞ 「식품위생법」 상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원인 제공자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조원이 광고시안 작성 등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판매원이 자체적으로 작성·홍보한 광고가 허위·과대광고인 경우라면 제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Q14. 일반음식점 내 카지노시설 설치만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술을 마시며 카지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일명 카지노 술집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지 않고, 칩을 현금화하거나 상품으로 바꾸어준 사실 없이 일반음식점에서 카지노 테이블을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행위만으로도 식품위생법상 사행행위 조장으로 인한 영업자 준수사항위반에 해당하나요?

- ☞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7.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다.에 의하면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 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안의 경우 업소 안에 카지노 시설을 갖추고 고객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하는 것은 상기의 준수사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 Q15.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행정심판청구'가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의 1. 4. 규정 중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 ☞ 행정심판을 청구한 시점은 이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동일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의 1. 4.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16. 식품접객업소 수족관물에서 식중독균 검출 시 행정처분 기준**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수족관물에서 식중독균 검출 시 행정처분 여부?

- ☞ 수산물을 보관하기 위한 수족관 물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7.3.(5)에 의하여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상기 기준 및 규격 제7.4.다)(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나, 수족관물에 대한 식중독균 기준이 없으므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7. 4. 규격 다) (1) 수족관물 : 세균수(1mL 당 100,000이하), 대장균군(1,000이하/100 mL).

**관련 법령**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개정 2017. 12. 29.>

###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 I.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 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 나. 한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 가.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영업정지 처분만 할 것
  - 나.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 다.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만 할 것
  - 라.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3.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법 제7조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4.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5.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4조부터 제6조 까지, 법 제8조, 법 제19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법 제7조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식품등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
6. 제5호에 따른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수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7.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접객업자가 별표 17 제7호다목, 타목, 하목, 거목 및 버목을 위반하거나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는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9. 4차 위반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르고, 5차 위반의 경우로서 가목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하고, 나목의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가목을 6차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여야 한다.
  - 가.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한다.

- 나.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로 하되,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 다. 식품등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로서 4차 이상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10. 조리사 또는 영양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4차 위반인 경우에는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업무정지이면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로 하되,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고, 5차 위반인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11. 식품등의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식품등의 제조·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조리 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전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식품등이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해당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하여야 한다.
12. 제11호 단서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제조·가공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판매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3.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및 용기·포장류제조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14. 법 제86조에 따른 식중독 조사 결과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 또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제조·가공, 조리·판매 또는 제공된 식품이 해당 식중독의 발생원인으로 확정된 경우의 처분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식품제조·가공업소: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호다목

나. 식품판매업소: II.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1호다목

다. 식품접객업소: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호다목2)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분의 9이하의 범위로 한다)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사항 중 산가, 과산화물가 또는 성분 배합비율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표시기준의 위반사항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 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식품 등을 제조·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라.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영업자가 식중독의 재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설을 개수하거나 살균·소독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 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유독·유해물질 등이 해당 식품에 혼입여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최초의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
  - 자. 별표 17 제7호머목에 따라 공통찬통, 소형찬기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
  - 차. 법 제4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카. 그 밖에 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6. 소비자로부터 접수한 이물혼입 불만사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시·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 영업자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수에 관계없이 시정명령으로 처분한다. 소비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행정기관의 장에게만 접수한 경우도 위와 같다.
- 가. 영업자가 검출된 이물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시설 및 작업공정 개선, 직원 교육 등 시정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관할 행정기관이 평가한 경우
  - 나. 이물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의 기술적 한계 등의 사유로 이물혼입이 불가피하였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이물혼입의 불가피성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17. 뷔페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별표 17 제7호저목에 따라 빵류를 제공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면 II. 개별기준의 3. 식품접객업의 제7호가목1) 에도 불구하고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8.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19.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 II. 개별기준

##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 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 가 있는 것		영업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 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 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 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p>마.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p>	<p>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p>
<p>바.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p>	<p>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p>
<p>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소분 대상이 아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p>	<p>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p>
<p>2.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p>	<p>법 제72조 및 법 제75조</p>	<p>영업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p>	
<p>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p>	<p>법 제72조 및 법 제75조</p>	<p>영업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p>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가.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지 않은 식품등으로서 식품(원료만 해당한다)을 제조·가공 등 영업에 사용한 것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판매등 영업에 사용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 의 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펜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 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3 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3 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마. 농산물 또는 식육의 농약잔류허 용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3 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바. 곰팡이독소 또는 패류독소 기준 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3 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사.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것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3 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p>아. 식중독균 또는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p>	<p>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자.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것</p>	<p>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p>	<p>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차.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증백제 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p>	<p>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카.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p> <p>1)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p>
<p>2)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서</p> <p>가)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것</p>	<p>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p>	<p>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다)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p>	<p>시정명령</p>	<p>품목 제조정지 1개월</p>	<p>품목 제조정지 2개월</p>

<p>타. 식품첨가물 중 질소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p>	<p>영업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폐기</p>		
<p>파. 나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 외에 그 밖의 성분에 관한 규격 또는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것으로서</p>		<p>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1)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p>	<p>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2)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p>	<p>품목 제조정지 15일</p>	<p>품목 제조정지 1개월</p>	<p>품목 제조정지 2개월</p>
<p>3)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p>	<p>4)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p>	<p>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7일</p>	<p>품목 제조정지 15일</p>
<p>하. 이물이 혼입된 것</p>	<p>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제외한다) 또는 유리의 혼입</p>	<p>품목 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p>	<p>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p>
<p>2)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 사체의 혼입</p>	<p>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p>	<p>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3) 1) 및 2) 외의 이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쇳가루를 포함한다)의 혼입</p>	<p>시정명령</p>	<p>품목제조 정지 5일</p>	<p>품목제조 정지 10일</p>
<p>거.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p>			
<p>1) 허용한 것 외의 선원 및 선종을 사용한 경우</p>	<p>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p>	
<p>2) 허용대상 식품별 흡수선량을 초과하여 조사처리한 경우와 조사한 식품을 다시 조사처리한 경우</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p>
<p>3) 허용대상 외의 식품을 조사처리한 경우</p>	<p>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너.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것</p>	<p>해당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p>	<p>해당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p>	<p>해당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p>
	<p>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소의 영업등록 취소 및 해당 제품 폐기</p>
<p>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식품제조·가공 등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식물을 원료로 사용한 것</p>	<p>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p>	<p>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2)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을 원료로 사용한 것</p>	<p>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3)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의 결과 또는 법 제31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나 그 밖에 영업자가 하는 자체적인 검사의 결과 부적합한 식품으로 통보되거나 확인된 후에도 그 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것</p>	<p>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4) 사료용 또는 공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등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않은 것을 식품 제조·가공시 원료로 사용한 것</p>	<p>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p>		
<p>5)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것</p>	<p>시정명령</p>	<p>품목 제조정지 7일</p>	<p>품목 제조정지 15일</p>
<p>러.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것</p>	<p>영업정지 7일</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1개월</p>
<p>머. 산가, 과산화물가 기준을 위반한 것</p>	<p>품목 제조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p>	<p>품목 제조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p>	<p>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p>
<p>버. 그 밖에 가목부터 머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것</p>	<p>시정명령</p>	<p>품목 제조정지 5일</p>	<p>품목 제조정지 10일</p>
<p>5.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 가. 유독기구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p>	<p>법 제72조 및 법 제75조</p>	<p>영업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p>	

<p>나. 유독기구 등을 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p>		<p>영업정지 7일</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1개월</p>
<p>6.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p>	<p>법 제71조,</p>			
<p>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것을 제조·수입·운반·진열·저장 또는 판매한 경우</p>	<p>법 제72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p>	<p>품목 제조정지 15일 시정명령</p>	<p>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5일</p>	<p>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10일</p>
<p>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 것을 사용한 경우</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다.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사용한 경우</p>				
<p>7. 법 제10조제2항, 법 제11조제2항, 법 제11조의2, 법 제12조의2, 법 제12조의3 또는 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p>	<p>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p>			
<p>가. 식품·식품첨가물(수입품 포함)에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으로서</p>				
<p>1)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2) 한글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입식품·식품첨가물에 한글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한글표시를 하지 아니한 수입식품·식품첨가물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나.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로서</p>				
<p>1)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명 및 내용량을 전부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p>		<p>품목 제조정지 1개월 시정명령</p>	<p>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15일</p>	<p>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 제조정지 1개월</p>
<p>2) 내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p>				

<p>다. 제품명 표시기준으로 위반한 경우로서</p>	<p>품목 제조정지 15일</p>	<p>품목 제조정지 1개월</p>	<p>품목 제조정지 2개월</p>
<p>1) 특정 성분을 제품명에 사용시 주표시면에 그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p>	<p>품목 제조정지 15일</p>	<p>품목 제조정지 1개월</p>	<p>품목 제조정지 2개월</p>
<p>2) 제품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기준에 위반한 제품명을 사용한 경우</p>	<p>품목 제조정지 15일</p>	<p>품목 제조정지 1개월</p>	<p>품목 제조정지 2개월</p>
<p>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p>	<p>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p>	<p>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1)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등만 해당한다)</p>	<p>품목류 제조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p>	<p>품목류 제조정지 20일과 해당 제품 폐기</p>	<p>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2)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3) 제조연월일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을 연장한 경우</p>	<p>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4) 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가공 없이 포장만을 다시 하여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p>	<p>품목 제조정지 15일</p>	<p>품목 제조정지 1개월</p>	<p>품목 제조정지 2개월</p>
<p>마. 원재료명 및 함량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p>	<p>품목 제조정지 15일</p>	<p>품목 제조정지 1개월</p>	<p>품목 제조정지 2개월</p>
<p>1) 사용한 원재료의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p>	<p>시정명령</p>	<p>품목 제조정지 15일</p>	<p>품목 제조정지 1개월</p>
<p>2) 사용한 원재료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p>			

<p>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성분·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그 사용한 원재료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p>	<p>품목 제조정지 15일</p>	<p>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4)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합성감미료,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에 대하여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p>	<p>시정명령</p>	<p>품목 제조정지 7일</p>	<p>품목 제조정지 15일</p>
<p>바. 그 밖에 표시사항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p>			
<p>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함에 있어 원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하는 등 원 표시사항을 변경한 경우</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2) 이온수·생명수 또는 약수 등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2개월</p>
<p>사.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부족량이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p>			
<p>1) 2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p>	<p>품목 제조정지 2개월</p>	<p>품목 제조정지 3개월</p>	<p>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p>
<p>2)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p>	<p>품목 제조정지1 개월</p>	<p>품목 제조정지 2개월</p>	<p>품목 제조정지 3개월</p>
<p>3) 1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p>	<p>시정명령</p>	<p>품목 제조정지 15일</p>	<p>품목 제조정지 1개월</p>
<p>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식품을 변조된 중량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저장·운반 또는 진열 등 영업에 사용한 경우</p>	<p>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p>		

<p>1) 식품에 납·얼음·한천·물 등 이 물을 혼입시킨 경우</p> <p>2) 냉동수산물의 내용량이 부족량 허용오차를 위반하면서 냉동수 산물에 얼음막을 내용량의 20%를 초과하도록 생성시킨 경우</p>	<p>해당 제품 폐기</p>		
<p>자. 조사처리식품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p>		<p>품목 제조정지 15일</p>	<p>품목 제조정지 1개월</p>
<p>1)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p> <p>2) 조사처리식품을 표시함에 있어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p>	<p>시정명령</p>	<p>품목 제조정지 15일</p>	<p>품목 제조정지 1개월</p>
<p>차. 사용금지한 식품첨가물 등에 "무" 등의 강조표시를 한 경우</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2개월</p>
<p>카.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와 관련한 사항으로</p>	<p>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표시 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p>	<p>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표시 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p>	
<p>1)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2개월</p>
<p>2)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p>	<p>품목 제조정지 1개월</p>	<p>품목 제조정지 2개월</p>	<p>품목 제조정지 3개월</p>
<p>3)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p>	<p>시정명령</p>	<p>품목 제조정지 15일</p>	<p>품목 제조정지 1개월</p>



<p>5)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p>	시정명령	품목제조 정지 15일	품목제조 정지 1개월
<p>6)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광고</p>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p>7) 표시·광고 심의 대상 중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p>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p>타. 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합성품의 경우 해당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p>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p>파.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위반하여 포장한 경우(파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0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p>하. 포장한 2개 이상의 제품을 다시 1개로 재포장한 것으로, 그 내용물이 재포장 용량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p>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p>거.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위반</p>			
<p>1) 유전자재조합식품에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p>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p>2)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아닌 것으로 표시·광고한 경우</p>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p>너.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하지 않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p>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5일	품목 제조정지 10일

<p>더. 가목부터 너목까지를 제외한 표시 기준 및 허위표시 등 위반사항이</p> <p>1) 3개 사항 이상인 경우</p> <p>2) 3개 사항 미만인 경우</p>		<p>품목 제조정지 15일 시정명령</p>	<p>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15일</p>	<p>품목 제조정지 2개월 품목 제조정지 1개월</p>
<p>8. 삭제 &lt;2016.2.4.&gt;</p> <p>9.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p> <p>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p> <p>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p> <p>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p> <p>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p>	<p>법 제71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p>	<p>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15일 시정명령</p>	<p>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15일</p>	<p>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p>
<p>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p>		<p>영업정지 5일</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1개월</p>
<p>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p>		<p>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p>		
<p>라.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2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p>10. 법 제36조 및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p> <p>가. 허가, 신고 또는 등록 없이 영업을 시작한 경우</p> <p>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p> <p>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p> <p>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p> <p>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경우</p> <p>마.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p> <p>바.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p> <p>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p> <p>아.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경우</p>	<p>법 제71조, 법 제74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p>	<p>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p> <p>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p> <p>시설개수 명령</p> <p>시정명령</p> <p>영업정지 1개월</p> <p>시설개수 명령</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7일</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2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2개월</p> <p>영업정지 2개월</p>	<p>영업정지 2개월</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2개월</p> <p>영업허가·등록취소</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	--	---	--	--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제외한 허가, 신고 또는 등록사항 중				
1)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	시설개수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11.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및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법 제75조			
1) 별표 17 제1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2) 별표 17 제1호다목 또는 카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별표 17 제1호아목·차목 또는 타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 별표 17 제1호자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5) 위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p>나. 증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 사항 중</p> <p>1) 별표 17 제2호가목 또는 아목을 위반한 경우</p> <p>2) 별표 17 제2호마목을 위반한 경우</p> <p>3) 별표 17 제2호사목을 위반한 경우</p> <p>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p> <p>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p> <p>4) 별표 17 제2호나목을 위반한 경우</p> <p>5) 별표 17 제2호라목 또는 바목을 위반한 경우</p> <p>6) 위 1)부터 5)까지 외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p> <p>다. 식품소분업 및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은 2. 식품판매업 등의 제9호가목에 따른다.</p> <p>라. 식품조사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p> <p>시정명령</p> <p>영업정지 7일</p> <p>시정명령</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2개월</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7일</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5일</p> <p>영업정지 5일</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10일</p> <p>영업정지 3개월</p>
<p>12.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p> <p>가.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75조</p>	<p>영업정지 2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허가 취소,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p>

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3.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3의2.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14.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가. 회수명령을 받고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회수하지 않았으나 회수한 것으로 속인 경우		영업정지 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15.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6.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7. 품목 및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 중에 품목제조를 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은 제외한다)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2. 식품판매업 등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p>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p> <p>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p> <p>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p> <p>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p> <p>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p> <p>마.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p> <p>바.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p>	<p>법 제72조 및 법 제75조</p>	<p>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소분대상이 아닌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2.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가.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균 또는 일반세균 기준을 위반한 것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다. 이물이 혼입된 것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라.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것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5.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6.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7. 법 제10조제2항 또는 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가. 식품·식품첨가물(수입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으로서				
1)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진열·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한글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입식품·식품첨가물에 한글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을 진열·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제품명 및 내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진열·판매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다.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진열·판매한 경우(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등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제조연월일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을 연장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가공 없이 포장만을 다시 하여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라.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1)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표시 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표시 된 제품만 해당함) 폐기	
2)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체험기 및 체험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4)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8. 법 제36조 및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수 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다.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냉동시설이 없거나 냉장·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1) 식품운반업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해당 차량 영업정지 3개월	전체 차량 영업정지 2개월

<p>2) 식품판매업 또는 식품냉동·냉장업</p> <p>라.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마.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p> <p>바. 신고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p> <p>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제외한 신고사항 중</p> <p>1)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p> <p>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p>		<p>영업정지 1개월</p> <p>시정명령</p> <p>시설개수 명령</p> <p>영업정지 1개월</p> <p>시설개수 명령 시정명령</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7일</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2개월</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5일</p>	<p>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2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2개월</p> <p>영업정지 15일</p>
<p>9.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p> <p>가. 식품소분·판매·운반업자의 준수 사항 중</p> <p>1) 별표 17 제3호다목을 위반한 경우</p> <p>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p> <p>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p> <p>2) 별표 17 제3호아목·차목 또는 카목을 위반한 경우</p> <p>3) 별표 17 제3호사목·자목 또는 파목을 위반한 경우</p> <p>4) 별표 17 제3호하목을 위반한 경우</p> <p>5) 위 1)부터 4)까지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p>	<p>법 제71조 및 법 제75조</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7일</p> <p>시정명령</p> <p>시정명령</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5일</p> <p>영업정지 3일</p>	<p>영업정지 3개월</p> <p>영업정지 2개월</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10일</p> <p>영업정지 7일</p>

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별표 17 제4호가목·다목 또는 바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1)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별표 17 제5호나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별표 17 제5호마목 또는 사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별표 17 제5호바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1)부터 3)까지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10.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가.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0의2.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1.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2.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 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3.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은 제외한다)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 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1)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2)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마.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바.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소분 대상이 아닌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2.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p>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p>	<p>법 제72조 및 법 제75조</p>	<p>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p>		
<p>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p> <p>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천연첨가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한 경우</p> <p>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것</p> <p>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펜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것</p> <p>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것</p> <p>마.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또는 식육을 원료로 사용한 것(「축산물가공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p> <p>바. 곰팡이독소 또는 패류독소 기준을 위반한 것</p>	<p>법 제71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p>	<p>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p> <p>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p> <p>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p> <p>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p> <p>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p> <p>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p>	<p>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p> <p>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p> <p>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p> <p>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p> <p>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p> <p>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p>

<p>사.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항생물질·합성항균제 또는 합성호르몬제)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것(「축산물가공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p>	<p>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p>	<p>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 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p>	
<p>아.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p>	<p>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p>	<p>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폐 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p>	
<p>1) 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음용수</p>	<p>시정명령</p>	<p>영업정지 7일</p>	<p>영업정지 15일</p>	
<p>2) 조리기구 등</p>	<p>자.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의 기준을 위반한 것</p>	<p>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p>	<p>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p>
<p>1) 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음용수</p>	<p>시정명령</p>	<p>영업정지 7일</p>	<p>영업정지 15일</p>	
<p>2) 조리기구 등</p>	<p>차.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을 사용한 것</p>	<p>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p>	<p>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p>
<p>1) 허용 외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것 또는 기준 및 규격이 정해여지지 아니한 첨가물을 사용한 것</p>	<p>2)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에 초과한 것으로서</p>			



가)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다)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카. 식품첨가물 중 질소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타. 이물이 혼입된 것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파.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을 사용한 것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원료 기준이나 조리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사료용 또는 공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등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않은 원료를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된 것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5.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6.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7.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가. 식품·식품첨가물(수입품 포함)에 대한 표시사항의 위반으로서				
1)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한글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입식품·식품첨가물에 한글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 경우(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등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2) 제조연월일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을 연장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가공없이 포장만을 다시 하여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p>다.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와 관련한 사항으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한 경우</li> <li>2)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li> <li>3) 삭제 &lt;2011.8.19&gt;</li> </ol>		<p>시정명령</p>	<p>영업정지 7일</p>	<p>영업정지 15일</p>
<p>라. 삭제 &lt;2011.8.19&gt;</p>		<p>시정명령</p>	<p>영업정지 5일</p>	<p>영업정지 10일</p>
<p>8. 법 제36조 또는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p> <p>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p>	<p>법 제71조, 법 제74조 및 법 제75조</p>	<p>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p>		
<p>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li> <li>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li> </ol>		<p>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p>		
<p>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시설개수 명령</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1개월</p>
<p>라. 시설기준 위반사항으로</p>		<p>시정명령</p>	<p>영업정지 7일</p>	<p>영업정지 15일</p>
<p>1)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p>		<p>시설개수 명령</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2개월</p>
<p>2)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p>		<p>시설개수 명령</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2개월</p>
<p>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가 방음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시설개수 명령</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1개월</p>
<p>마.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p>		<p>영업정지</p>	<p>영업정지 1개월</p>	<p>영업정지 2개월</p>
			<p>영업정지 2개월</p>	<p>영업정지 3개월</p>

바.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냉동시설이 없는 경우 또는 냉장·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사.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수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아. 그 밖의 가목부터 사목까지 외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개수 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9. 법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가.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영업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0.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7 제7호자목·파목·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1) 별표 17 제7호타목1)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별표 17 제7호다목·타목5) 또는 버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3) 별표 17 제7호타목2)·7)·거목 또는 서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4) 별표 17 제7호나목, 카목, 타목 3)·4), 하목 또는 어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별표 17 제7호너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6) 별표 17 제7호러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별표 17 제7호처목을 위반하여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8) 별표 17 제7호커목을 위반한 경우로서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가) 주재료가 다른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중량이 3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중량이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9) 별표 17 제7호퍼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나. 위탁급식업영업자의 준수사항(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1) 별표 17 제8호가목·다목·라목·차목 또는 카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별표 17 제8호사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별표 17 제8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4) 별표 17 제8호타목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5)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11.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2. 법 제51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13.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과 별표 17 제7호자목·머목은 제외한다)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4. 조리사

위반 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80조	면허취소		
2. 법 제56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3.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법 제80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면허취소
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80조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면허취소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80조	면허취소		

Ⅲ. 과징금 제외 대상

1. 식품제조·가공업 등(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제4호나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차목, 카목1)·2)가) 또는 거목1)·2)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제7호카목1)에 해당하는 경우
- 라.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바.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2. 식품판매업 등

- 가. 제1호가목·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제7호라목1)에 해당하는 경우
- 라.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바.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 3. 식품접객업

- 가. 제1호가목·나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제8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제10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
- 라. 제11호나목·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바.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 사.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 4. 제1호부터 제3호(사목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 일반기준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 14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 Q1. 집단급식소 대표자명

소속기관대표의 잦은 변경으로 집단급식소설치 변경신고 등의 애로사항이 있어 대표자를 개인이 아닌 소속장으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를 할 수 있나요?

- ㉞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의 ‘기재 사유의사항 및 신고 후 준수사항’의 1.에서는 “집단급식소의 종류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집단급식소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그 기관의 장을 적고, 생년월일란은 적지 않습니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어, 귀 기관이 상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할 구청 위생관련부서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나목 : 학교, 다목 : 병원, 라목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바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관련 법령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42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2014.5.9., 2017.1.4.>

② 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종료 신고를 한 설치·운영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8호

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2017.1.4.>

1. 제42조제1항제1호의 서류
  2. 제42조제4호의 서류. 다만,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제1항 또는 제2항(종전 집단급식소의 시설·설비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2017.1.4.>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신고대장에 기록·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4.5.9.>
- ⑦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1., 2012.12.17., 2014.5.9.>

1.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⑧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31., 2014.5.9.>

⑨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그 운영을 그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 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1., 2014.5.9.>

## 15

##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 Q1. 보존식 보관 방법(1)

자장밥이나 카레라이스처럼 배식용기에는 자장소스와 밥, 카레소스와 밥이 따로 담기지만 아이들 식판에 담아줄 때는 같이 담아주는 메뉴일 때 보존식은 같이 담아 보관해도 되나요?

- ④ 카레라이스 및 자장밥 등의 경우 각각 조리한 개별 메뉴(카레, 밥, 자장 등) 별로 1인분 분량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Q2. 보존식 보관 방법(2)

집단급식소에서 매기에 제공되는 테이크아웃 음료수가 약 20여종으로, 조, 중, 석식 모두 같은 20여종을 제공할 경우 하루에 한번만 보존식을 실시하면 되나요?

- ④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장) 내에서 급식 메뉴의 일환으로 음료수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보존식의 의무가 있으며, 매 끼니별로 제공되는 음료의 보존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Q3. 보존식 보관 방법(3)

병원에서 기본 제공하는 반찬 외에 의사가 처방하여 치료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관식(캔)에 대해서 보존식의 의무가 있나요?

- ㉞ 병원에서 보관(보존)하여야 하는 “일반식”은 환자 등에게 일반적인 식사로 조리·제공되는 음식물을 의미하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특정 환자에게 제공되는 경관식의 경우 보존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4. 남은 급식을 재가열, 재조리하여 제공 가능 여부

환자에게 배식하고 남은 음식을 재가열이나 재조리하여 사용 가능한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보관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 ㉞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배식은 조리 후 1~2시간 이내에, 배식 후 남은 음식의 경우 전량 폐기\*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매뉴얼」p.83 참고.

### 관련 법령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리·제공한 식품(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7.12.29.>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0.3.19., 2013.3.23.>

## 16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 Q1.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대상 여부

지하수 사용업장의 주방 내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화장실 내에 수세시설에서 사용해야 하는 물도 소독장치를 통해 여과된 물을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 Ⓢ 집단급식소 내에서 조리를 하거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화장실 내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는 수질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별표 25] <개정 2012.12.17.>

###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제96조 관련)

#### 1. 조리장

- 가. 조리장은 음식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 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아.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자. 조리장에는 쥐·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2. 급수시설

- 가. 수도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3. 창고 등 보관시설

가.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나.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조리장에 갖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고에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 4. 화장실

가.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가 위치한 건축물 안에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준을 갖춘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5. 삭제 <2011.8.19>



## 17 제10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Q1. 집단급식소에서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았을 시 과태료 처분 기준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 보관 시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처분은 무엇인가요?

- ㉞ 집단급식소에서 식품등을 보관할 때 해당 식품에 정해진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 관련 [별표 27] 1.다.에 따라 1차 위반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 과태료 200만원, 3차 위반 과태료 300만원 부과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 Q2. 마트에서 냉동 수산물을 상온에서 판매할 시 과태료 처분 대상 여부

마트 수산코너에서 냉동 수산물 절단 후 랩 포장하여 상온 판매하면 보관온도 위반인가요?

- ㉞ 질의하신 갈치, 동태 등이 냉동 수산물을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1/2 또는 1/4 등)하여 포장한 제품이라면 '수산물'에 해당되며, 24시간 이내에 냉장(0~10℃)으로 유통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온(15~25℃)에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 관련 [별표 27] 1.다.에 따라 1차 위반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 과태료 200만원, 3차 위반 과태료 300만원 부과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 Q3. 과태료 부과 기준 상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식품위생법」 제101조 과태료 부과기준 상 「식품위생법」 제44조 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무엇인지?

- ㉞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1조(과태료의 부과대상)에 따라 법 제101조제3항 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1.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가 별표 17 제6호자목에 따른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 영업자가 별표 17 제6호파목에 따른 종업원명부 비치·기록 및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제10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7조 및 영 별표 2에 따라 법 제3조 및 법 제88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별표 27] <개정 2017. 1. 4.>

**법 제3조 및 제88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제100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1호 및 영 제67조			
가.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에 위생해충을 방제(防除) 및 구제(驅除)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거나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50	100	150
나.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을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30	60	90
다.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 시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지 아니한 경우(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제외한다)		100	200	300
라.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경우		20	40	60
마. 제조·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영업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뜬어 분할하여 판매한 경우		20	40	60

<p>바.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를 사용한 후에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를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p>		50	100	150
<p>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경우(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제외한다)</p>		30	60	90
<p>2. 법 제88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p>	<p>법 제101조 제2항제10호 및 영 제67조</p>			
<p>가. 별표 24 제3호를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p>		100	200	300
<p>나. 별표 24 제4호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p>		50	100	150
<p>다.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를 사용한 경우</p>		100	200	300
<p>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별표 2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p>		30	60	90